차세대 공직윤리시스템
사용자 지침서

재산등록 매뉴얼

- 목 차 -

Ⅰ. 재산신고 개요 ---------- 1

Ⅱ. 최초신고서 작성방법 ---------- 18

- 공직윤리시스템 접속방법 ---------- 19
- 메인화면 ---------- 20
- 정보제공 동의신청 ---------- 21
- 본인정보 ---------- 23
- 친족정보 수정 ---------- 25
- 친족 추가 ---------- 27
- 고지거부 자가진단 ---------- 28
- 고지거부 신청 ---------- 29
- 재산신고 주요 실수사례 ---------- 32
- 재산신고 메뉴 ---------- 33
- 부동산정보열람 ---------- 34
- 토지(소유권,지상권,전세권) ---------- 35
- 건물 ---------- 37
- 자동차·건설기계 ---------- 40
- 현금 ---------- 42
- 예금·보험 등 ---------- 43
- 금융정보활용입력 ---------- 45
- 정치예금 ---------- 46
- 유가증권 ---------- 47
- 사인간채권 ---------- 48
- 채무 ---------- 49
- 금 및 백금 ---------- 50
- 보석류 ---------- 51
- 골동품 및 예술품 ---------- 52
- 회원권 ---------- 53
- 지식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 54
- 출자지분 ---------- 55
- 출연재산 ---------- 56
- 미신고내역검증 ---------- 57
- 공개목록 ---------- 59
- 신고서 제출 ---------- 60

Ⅰ. 재산신고 개요

Ⅰ 최초 재산신고 개요

□ 법적 근거

○ 최초 재산등록의무자는 임명일 등 등록의무자가 된 날(등록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신고(공직자윤리법 § 5①)

※ 정무직 등 고위공직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관보·공보로 재산 공개(법 § 10①)

□ 최초 재산신고 방법

○ **(등록대상)** 대통령·국무위원·지자체장 등 국가 및 **지방의 정무직**,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대학의 총·학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 정무직, 1급(고공단 '가'급), 일정규모 공직유관단체 장 등은 재산공개 대상

○ **(등록기간)** 등록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예) '18.7.1일 임기 개시 → 8.31일까지 신고, 공개자는 9월말까지 관보·공보로 재산을 공개

○ **(등록재산)** 등록기준일 현재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재산 일체**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 광업·어업권,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자동차·선박 등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포함), 예금·보험,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 재산권 등

○ **(등록방법)**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peti.go.kr)에 공인인증서 또는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로 접속하여 신고

□ 최초 재산신고 시 유의사항

○ 등록기준일(임기 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서 작성일 현재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예금, 증권 및 채무는 모두 신고

- 계좌별 1천만 원 이상인 예금, 증권, 채무만 신고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함

※ 예) 본인 예금 합계액 3백만 원, 본인 증권 합계액 7백만 원 → 등록대상 아님
자녀 예금(6개 계좌) 합계액 12백만 원 → 등록대상임

○ **토지·건물 등 부동산, 광업권·어업권 및 부동산 규정 준용 권리, 골프회원권**은 **실거래가격**(취득가격 또는 보상액)**과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

* ①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②건물: 공동주택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등
③광업권 등: 지방세 시가표준액(과세표준) 또는 전문가 등의 평가액
④골프회원권: 지방세 시가표준액(과세표준)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의 재산은 모두 신고

- 실제 본인 재산은 아니나,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종중재산, 동창회비(친목회비) 예금계좌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기타 참고사항

○ **(고지거부)** 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 중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타인이 부양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재산 고지거부신청이 가능

※ 등록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필수(예: '18.7.1일 임용 → 7.31일까지 신청)

○ **(정보제공)** 정보제공동의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토지 등 부동산 정보와 예금계좌별 잔액 등 금융정보를 재산등록 시 제공받을 수 있음

※ 등록기준일의 다음 달 15일 이내, 다만 **등록기준일이 매월 1일인 경우 그 달 15일 이내**(예: '18.7.1일 임용 → 7.15일까지 제출)

○ **(주식백지신탁)**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계약 필요

※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보유가능

◈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문의처**

▹ PETI 접속 및 시스템 등 종합 문의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1522-4273)
▹ 재산등록 문의 : 각 부처 감사실 또는 인사혁신처(재산심사과, 044-201-8482, 8464)
▹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발급 관련 문의 : 소속부처 정보화담당부서
▹ 기타 사용문의 및 질의 : www.peti.go.kr 게시판

Ⅱ 최초 재산신고 방법 세부내용

작 성 순 서	신 고 항 목	주 요 신 고 내 용
① 본인정보 수정	- 소속, 직급, 직위, 주소, 연락처 등	▸등록기준일 현재 상태로 작성
② 친족정보 수정	- 친족의 신상정보, 고지거부, 등록대상, 직업, 거주형태 등	▸등록기준일 현재 친족정보 작성 ※ 주민등록등본 참고 ※ 직계존비속이 고지거부 대상이라도 우선 등록 후 고지거부 허가 신청 ※ 최초신고 등록기준일 이전에 혼인(신고)한 딸, 사망한 직계존비속의 경우 등록하지 않음
③ 총괄표 작성	- 부동산(토지・건물)	▸평가액(공시지가, 공시가격 등)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 신고, 둘 중 하나만 확인 가능한 경우 해당 금액 신고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고 ※ 평가액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활용 또는 부동산 소재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 ▸타인건물의 임차권(전세권)은 건물항목에 신고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참고, 임차보증금 기입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등 - 광업권・어업권 및 부동산 규정 준용 권리	▸자동차는 가장 최근의 자동차보험 상 차량기준 가액을 기입 ※ 자동차보험증서 참고 ▸광업권·어업권 등은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 신고, 둘 중 하나만 확인 가능한 경우 해당 금액 신고
	- 예금・보험・증권, 사인 간 채권・채무 등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신고기준일 현재 예금 잔액이 '+'이면 '예금'에, '-'이면 '채무'에 신고 ▸투자신탁수익증권(펀드 등)은 예금항목에 신고 ▸소유 건물 (임대)보증금은 건물임대채무에 신고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참고
	- 금・백금	▸소유자별 합계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 보석・골동품 및 예술품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 회원권	▸골프, 헬스, 콘도미니엄 등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은 모두 신고 ※ 골프회원권은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 신고, 둘 중 하나만 확인 가능한 경우 해당 금액 신고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회원권으로 신고
	- 지식재산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해당사항 있는 경우 신고
	-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해당사항 있는 경우 신고
④ 공개목록 작성	- 등록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보에 공개되는 사항	▸개인정보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작성에 주의 ▸토지인 경우 지목(임야, 답 등)과 지번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 종류(주택, 아파트, 상가 등)만 기재하고 지번과 동・호수 기재 생략
⑤ 신고서 제출	- 재산신고 항목 최종 확인	▸최종 확인 후 제출

1 본인정보 수정

○ 등록의무자의 소속, 직위, 직급, 주소, 연락처 등을 **등록기준일**(임명일) **현재**의 상태로 수정

○ 자택 및 직장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신고

○ 주소지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 또는 전세권이 아닌 경우 그 권리의 종류나 거주형태(예: 관사, 기숙사, 친척집 등)를 선택

2 친족정보 수정

○ 친족(등록의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주소, 직업 등을 등록기준일 현재의 상태로 입력

※ 친족의 주소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전세권, 관사, 기숙사, 친척집, 기타 등 관리형태를 신고

○ 친족 중 사망한 사람이나 결혼한 딸의 경우 친족정보에 미입력

○ 친족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신고

3 총괄표 작성

○ **부동산(토지, 건물)** … 부동산정보 조회내역 보기(29p) 참조

《참고: 부동산 공시가격 제공》

◈ 부동산 정보 입력시 '**부동산정보열람**'에서 제공된 **토지 및 건물 지번주소**를 **입력**하면 별도로 공시가격 조회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도 PETI 시스템에서 공시가격*을 자동 호출하여 **가액 계산 가능**

*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만 해당

✓ **소재지 정보(지번)를 정확히 기재한 경우에만 서비스 이용 가능**

- 권리자, 권리종류(소유권·임차권 등), 소재지, 지목·종류 및 용도(전·답, 아파트·연립주택 등), 면적, 가액 등 부동산 권리에 대한 상세명세를 입력

※ **전세권(임차권) 및 분양권은 건물항목에 신고(누락 주의)**

- 공동소유 부동산은 '면적'과 '가액' 란에 소유 지분 신고(예: ○○㎡ 중 ○○㎡)

- 소유권으로 신고한 건물의 관리형태를 '비고' 란에 반드시 기재

※ 예) 등록의무자의 주소지, ○○○에게 임대, 공실로 관리 등

-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건물항목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 신고(대지면적과 건물면적을 각각 기입하고 가액은 합산)하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는 토지항목에 건물은 건물항목에 분리하여 신고

※ **아파트**의 경우 **건물면적만 기재**하고 대지권은 기재할 필요가 없음

- **부동산의 가액**은 **평가액**(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공시가격, 지방세 시가표준액 등)**과 실거래가격**(취득가격, 보상액)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여 신고하되, 둘 중 어느 하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가격으로 신고

- 미입주 분양아파트의 경우 가액란에 중도금 등 실제 납입금액 기재

※ 실거래가격 란에 총분양가를 기재,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 분양권 신고 제외

◈ **부동산 평가액 산정 방법**
(※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토지가액)** 시·군·구에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기재

- **(주택가액)** 주택 유형별로 기재

  ▸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신고

  ▸ 단독주택 : 해당 시·군·구에서 공시한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을 신고

  ▸ 기타 상가·빌딩·오피스텔 등 : **대지가액+건물가액을 합산하여 신고**

대 지 가 액	건 물 가 액
▪ 시·군·구에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산출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국세청 기준시가, 지방세 시가표준액) 중 최고가액 *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 지방세 시가표준액은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고시하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 없이 해당 기준시가로 가액을 신고 (수도권 및 광역시 중 오피스텔 전체, 상업용 건물은 건물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이거나 100개 호 이상인 경우 대지와 건물의 총 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고시 중)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광업권·어업권에 대해 광물의 종류 또는 어업면허의 종류, 소재지, 존속기간 등을 신고하고,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는 종류, 제작연도, 제작자, 배기량, 등록번호 등 권리명세를 신고
- **광업권·어업권 및 부동산 규정 준용 권리**는 **평가액**(지방세 시가표준액, 전문가 평가액 등)**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가액을 신고하되, 둘 중 어느 하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가격으로 신고
- 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는 평가액(지방세 시가표준액, 전문가 평가액 등)으로 신고하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신고
- 자동차는 재산등록기준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자동차보험 상 차량기준가액**, 지방세 시가표준액, 실거래가격 순으로 가액 신고

※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경우 자동차 가액 신고 후 할부 잔액은 채무 란에 신고

◈ **리스자동차 신고방법**

-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신고대상 아님, 다만 리스로 인한 채권, 채무는 신고 필요
  - ✓ 리스 보증금은 채권 란에, 리스 잔여대금은 채무 란에 신고
  - ✓ 여신업체 등을 통한 리스의 경우 리스보증금은 예금 란에, 리스 잔여대금은 채무(금융기관채무) 란에 신고

○ **현금(수표 포함)**

- 현금 및 자기앞수표의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 현금 보관사유(사용용도), 자금출처 등 기재

○ **예금(보험·수익증권·펀드·CD·투자자예탁금 포함)** … 금융정보활용입력(38p) 참조

- 소유자별 예금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모든 예금을 신고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별도로 신고)

※ 보험, 수익증권, 펀드 등을 포함, 보험약관대출은 채무항목에 신고

※ **봉급에서 자동 이체되는 지방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예금 누락 주의**

- 순수보장성 보험(자동차보험 등 소멸성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은 신고대상
- 수익증권(펀드 등)의 경우 등록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으로 신고
-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신고기준일 현재 예금 잔액이 '+'이면 '예금' 란에, '-'이면 '채무' 항목에 신고
- 실제 본인 재산은 아니나, **본인 명의**의 **동창회비**(친목회비), **개인 사업자금** 등은 **예금의 성격을 불문**하고 **등록** 후 '비고'란에 사실 관계 기재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일반예금과 마찬가지로 보통예금, 정기예금, CD, 보험, 수익증권(펀드 등), 투자자예탁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
- 재산등록기준일 현재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등록하고 '비고' 란에 해당 계좌가 수입용인지 지출용인지 기입

○ **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

… 금융정보활용입력(38p) 참조

- 소유자별 증권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모든 증권을 신고
- 증권의 종류(주식, 국채 등), 발행인(종목명), 종목코드(주식의 경우만 해당되며 상장주식의 경우 반드시 기재), 수량, 가액 등 보유 증권에 대한 상세정보를 기입

※ 금융투자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신고**하고, 같은 법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펀드 등)은 예금 항목에 신고**

-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은 재산등록기준일의 최종가격으로 가액을 등록하고,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로 신고하되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은 재산등록기준일의 '**거래량 가중 평균가**'로 신고

◈ K-OTC 시장 개요

-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
- 종전 프리보드시장을 확대·개편한 시장으로 비상장 중소기업주뿐만 아니라 비상장 유명 대기업주도 거래되고 있으며, **시장 홈페이지(http://k-otc.or.kr)를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량 가중 평균가' 확인 가능**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액' 란에 매각 금액 또는 백지신탁계약 체결 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여부를 기재
- 보유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도 신고

※ 받을 주식의 종류 및 수량, 행사 가격·기간 등 조건, 받을 주식의 현재시가 등 기재

※ 받을 주식이 상장주식이면 등록기준일 현재 시가를, 비상장주식이면 액면가를 가액으로 산정

○ **채권**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권을 신고하고 반드시 건별로 구분하여 등록
- 주택이나 그 밖의 **부동산의 전세(임차)보증금은 부동산 항목에 기입**
- 사인 간 채권의 경우 채무자명, 채무자 주소(전화번호) 등 상세정보를 기입

○ **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무를 신고하고 반드시 건별로 구분하여 등록
- 주택·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임대) **보증금은 건물임대채무로 신고** ※ 토지 임대 시 토지임대채무로 신고
-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채무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 금융기관채무 신고는 금융정보활용입력(38p) 참조

- 사인 간 채무의 경우 채권자명, 채권자 주소(전화번호) 등 상세정보를 기입

◈ **등록대상재산 중 현금·예금·증권·채권 및 채무의 경우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미만이라고 자의적 판단하여 재산신고 누락하는 사례 주의**

- 신고 당시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판단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나, 재산심사에서 누락한 예금·증권 등이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으로 나타나 보완명령 이상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 필요

○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 소유자별 합계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모든 금 및 백금을 신고
- 등록기준일 현재 시장가격(시장가격×보유중량(g))으로 가액을 산정하여 신고

※ 보석류에 부착되어 있는 금 및 백금은 보석류 항목에 신고

○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 품목당 가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모든 보석류 등을 신고

※ 골동품 및 예술품은 품명, 크기(cm), 작가, 제작연대 등 작품 세부정보를 기재

- 등록기준일 현재 전문가 등의 평가액으로 가액을 산정하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을 신고

○ **회원권**

- 골프·헬스·콘도미니엄 등 종류를 불문하고 권당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모든 회원권을 신고

  ※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회원권으로 신고하고 '비고' 란에 면적 등 정보를 기재**

- **골프회원권**은 **평가액**(지방세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가액을 신고하되, 둘 중 어느 하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가격으로 신고

- 그 외 회원권은 취득가격으로 가액을 신고

○ **지식재산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 · 등록번호 등 지식재산권의 권리명세를 기입

-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한 연간소득금액을 신고하고 '비고' 란에 소득원인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 합명 · 합자 · 유한회사에 대한 출자가액과 출자지분 및 연간 매출액 등 정보를 기재

  ※ 합명·합자·유한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체에 대한 출자지분은 등록대상이 아니며, 등록대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체에 대한 재산은 예금, 유가증권, 채권, 채무, 부동산 등의 보유 형태에 따라 해당 항목에 등록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금액 또는 출연재산, 법인의 내역(명칭, 소재지, 대표자 등), 출연자가 비영리법인에서 보유하는 직위 및 직무 등을 기입

4 공개목록 작성

○ 재산등록신고서 작성 후 자동 생성되는 공개목록 초안을 기초로 작성하되, **개인정보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 재산등록기준일의 소속 및 직위를 기입

- **(광역단체장)** 【소속】ㅇㅇ시·도 【직위】시·도지사
- **(기초단체장)** 【소속】ㅇㅇ시·도 ㅇㅇ시·군·구 【직위】시·군·구청장
- **(광역의원)** 【소속】ㅇㅇ시·도의회 【직위】의원

○ 재산의 종류 란에는 토지의 경우 임야·전·잡종지 등 지목을 기재하고, 건물의 경우 단독주택·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을 기재

○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은 **번지**와 **동·호수 기재 생략**

※ 예) 단독주택 : ○○시 ○○동 대지 --㎡ 건물 --㎡
공동주택 : ○○시 ○○동 ○○아파트 건물 --㎡

※ 특히, 외국 소재 부동산 소유권 등의 경우 세부주소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자동차는 연식, 차종, 배기량을 기재하고, **차량번호**와 차량 제조회사는 **기재 생략**

※ 예) 2013년식 소나타 배기량(2000cc)

○ 사인간 채권·채무의 경우 채권·채무자의 **주소, 성명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

※ 건물임대채무의 경우 임차인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

○ 고지거부하거나 등록제외한 친족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비고 란에 기재(독립생계유지, 타인부양, 딸의 혼인 등)

5 신고서 제출

: 등록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24:00까지

※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18.8.31일 24:00까지 제출

Ⅲ 최초 재산등록 관련 Q&A

질 문	답 변
1 총 론	
① 재산의 등록기준일 및 등록기간은?	‣ 모든 재산은 임명일(재산등록기준일) 기준으로 2개월째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서 작성일 당시의 재산이 아니라 등록기준일 당시의 보유 재산을 신고
② 재산을 등록해야하는 대상의 범위는?	‣ 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해야합니다. ‣ 직계존·비속은 등록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받은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②-1. 재산등록 대상이 사망한 경우 처리방법은?	‣ 등록의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해당인의 재산은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②-2. 본인의 친자녀를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을 경우 친자녀의 재산을 등록해야하는지?	‣ 자녀의 양육 주체에 관계없이 친자녀는 직계비속에 해당되므로 재산을 등록해야합니다.
2 부동산 (토지, 건물)	
① 신규로 분양 받은 아파트 등 분양권의 신고방법은?	‣ 계약금만 납부한 경우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건물 항목(분양권)에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분을 합산하여 가액으로 신고하고 총분양가액을 별도로 신고하면 됩니다.
② 건물 임대 또는 임차 시 재산신고 방법은?	‣ (임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건물 항목에 등록하고 임대 후 받은 보증금은 채무 항목에 건물임대채무로 신고합니다. ‣ (임차)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건물 항목에 전세권으로 등록하며 임차보증금을 전세권의 가액으로 신고합니다.
③ 건물 임차 시 보증금 일부를 납부하고 월세를 매달 지급하는 이른바 '반전세'의 경우 재산 신고방법은?	‣ 건물 항목에 전세권으로 등록하고 보증금을 전세권의 가액으로 신고합니다. ※ (예시)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40만 원 원룸 임차 ⇒보증금 1천만 원만 전세(임차)권으로 신고 ‣ 보증금 없이 월세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table>
<tr><th>질 문</th><th>답 변</th></tr>
<tr><td>④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재산 신고방법은?</td><td>‣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는 토지 항목에 건물은 건물 항목에 별도로 신고합니다.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건물 항목에 대지면적과 건물면적을 각각 기입하고 건물 및 토지의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td></tr>
<tr><td>⑤ 등기부등본 상 부동산의 명의인이나 실제 타인 재산(예:문중재산)인 경우 재산 신고 방법은?</td><td>‣ 해당 부동산을 재산으로 신고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비고란에 별도로 기술합니다.</td></tr>
<tr><td>⑥ 직계존속 사망 등으로 상속이 진행 중이나 등기부등본 등에서 명의 이전이 안 된 경우 재산 신고방법은?</td><td>‣ 사실상 소유권으로 법정 상속지분을 신고하되 관련 사실관계를 비고란에 별도로 기술합니다.</td></tr>
<tr><td>⑦ 공동명의 부동산 신고방법은?</td><td>‣ 공동명의 부동산인 경우 재산등록대상 각각이 소유한 지분만큼 면적 및 가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 공동명의 부동산을 1인 소유로 신고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주의 필요</td></tr>
<tr><td>⑧ 부동산 가액 신고방법은?</td><td>‣ 평가액과 실거래가격(취득가격, 보상액) 중 높은 금액을 신고하되, 둘 중 어느 하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가격으로 신고합니다.
◈ 평가액 산정방법
‣ (토지) 해당 시·군·구에서 고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가액 산정
‣ (주택) 주택 유형별로 별도 방법으로 가액 산정
-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신고
- 단독주택: 해당 시·군·구에서 고시한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을 신고
- 기타 상가·빌딩·오피스텔 등
: ①대지가액과 ②건물가액을 합산하여 신고
<table><tr><th>① 대 지 가 액</th><th>② 건 물 가 액</th></tr><tr><td>▪ 해당 시·군·구에서 고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산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개별공시지가 확인</td><td>▪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국세청 기준시가, 지방세 시가표준액) 중 최고가액
*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 지방세 시가표준액은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td></tr></table></td></tr>
</table>

질 문	답 변
3 예금, 증권, 채무	
①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하는데, 그 의미는?	▸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개개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예금, 증권, 채무 각각의 항목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 사례 예시 1. 본인 예금 합계액 8백만 원, 배우자 예금 합계액 4백만 원인 경우 ⇒ 등록대상 아님 2. 본인 예금 합계액 3백만 원, 본인 증권 합계액 8백만 원 ⇒ 등록대상 아님 3. 자녀 1인의 예금(6개 계좌) 합계액 12백만 원 ⇒ 등록대상임 4. 본인 예금(2계좌) 합계액 7백만 원, 배우자 예금(6계좌) 합계액 25백만 원, 아버지 예금(1계좌) 합계액 3백만 원 ⇒ 배우자 예금(6계좌) 25백만 원만 등록대상 ▸ 계좌별 1천만 원 이상인 예금, 증권, 금융채무만 신고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 실제 본인 재산은 아니나 사업 등의 목적으로 본인 명의 예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재산 신고방법은?	▸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등 재산은 실제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하고 사실관계를 비고란에 별도로 기술합니다.
③ 증권계좌의 예탁금 및 간접금융상품의 재산 신고방법은?	▸ 증권계좌의 예탁금은 증권 구매를 위한 예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증권 항목이 아닌 예금 항목에 신고합니다. ▸ 증권회사의 간접금융상품(MMF, ELS, 수익증권 등)도 예금 항목에 신고합니다.
④ 금융정보활용입력을 통한 예금, 증권, 금융채무의 신고방법은?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등록기준일 현재 본인이 소유한 금융계좌의 잔액 현황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 받아 이를 활용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 등록기준일의 다음 달 15일 이내, 다만 등록기준일이 매월 1일인 경우 그 달 15일 이내(예: '18.7.1일 임용→7.15일까지)
④-1. 실제 본인이 소유한 계좌의 잔액과 금융기관이 회신해준 정보가 상이한 경우 신고방법은?	▸ 의무자가 직접 확인한 잔액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재산을 신고해야합니다. ※ 금융기관이 회신해준 자료는 참고용으로서 사실관계의 확인 및 최종 책임은 등록의무자에게 있음

질 문	답 변
④-2. 회신된 금융 정보 외 추가적인 금융재산을 소유 중인 경우 신고 방법은?	‣ 금융정보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회신되고 있으므로 해외은행 등의 금융정보는 회신되지 않습니다. ‣ 회신되지 않은 금융정보의 경우 등록의무자가 추가로 해당 재산을 확인하여 등록해야합니다.
⑤ 보장성 보험도 신고대상인지?	‣ 저축성 보험 또는 환급을 받는 보험의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 다만, 자동차 보험 등 환급금 일체가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의 경우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⑥ 마이너스 통장의 신고방법은?	‣ 등록기준일 현재 통장의 잔액이 (-) 인 경우 금융채무로 신고하고, (+) 인 경우 예금으로 신고합니다.
⑦ 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은?	‣ 상장주식은 재산등록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거래량 가중 평균가, 그 외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로 신고합니다.
4 기 타	
① 재산신고를 잘못한 경우 어떠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신고한 재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잘못 신고한 재산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등록의무자로 하여금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청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산신고 시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②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 병가,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신청한 경우 재산공개자는 20일까지 등록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재산신고 후 재산공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신고기간 중 제출한 공개목록을 공개합니다.

□ 참고 : 재산신고 종류

종류	등록대상		등록 시기	고지거부 신청기간	등록 내용
최초 신고	신규자	- 최초 재산등록 의무자가된 경우(법 제5조제1항) * 예외)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달의말일 이내에 등록의무를 면제 받은 경우는 재산등록 제외	2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개월 이내	등록기준일 현재의 재산
	승진자	-재산등록 후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법 제10조제2항) * 예외)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달의말일 이내에 등록의무를 면제 받은 경우는 재산등록 제외			
변동 신고	정 기	- 등록의무자 전원(법제6조제1항) * 예외) ① 유예 허가 받은 경우 ☞ 유예 복귀 신고 ② 10~12월중 최초 등록의무자가 된경우☞ 최초신고 ③ 10~12월중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대상자가 된경우 ☞ 공개자최초신고 ④ 1~2월 중 퇴직한 경우 ☞ 퇴직신고 ⑤ 1~2월 중 의무면제된 경우 ☞ 의무면제신고	다음 해 2월말 까지	1.31일 까지 *재심사 : 2월말 까지	매년1.1 (또는 재산등록후) ~12.31까지 재산변동 사항
	의 무 면제자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퇴직 후 퇴직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아닌 공무원 등이 된 경우 포함) 전보 등으로 등록의무를 면제 받았을 때(법 제11조제1항) * 예외) 의무면제일로부터 2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이내 다시등록의무자가 된경우 ☞ 신고사항 없음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개월 이내	최종재산 등록이후 변동사항
	유 예 복귀자	- 외국기관으로 파견, 휴직 등으로 변동신고 유예 후 복귀자(법 제6조의3)			
	재등록 의무자	- 전보·강임·강등 또는 퇴직 등으로 의무 면제 후 3년 이내(퇴직한 경우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경우(법 제5조제1항단서)			
	퇴직자	- 퇴직한 경우(법 제6조제2항) - 등록대상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경우 (법제6조제4항) * 예외) ① 퇴직일로부터 2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 신고사항 없음 ② 등록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 신고면제처리			

□ 참고 : 재산신고 종류

종류	등록대상		등록 시기	고지거부 신청기관	등록 내용
보완 신고	최초 보완	- 최초재산신고서 심사결과 보완명령 이상의 심사처분 결과에 따른 보완신고	-	-	-
	변동 보완	- 변동재산신고서 심사결과 보완명령 이상의 심사처분 결과에 따른 보완신고			

※ 소속변경, 전출입 등 재산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 신분변동 관리 기능을 통해 처리

Ⅱ. 최초신고서 작성방법

Ⅱ. 최초신고서 작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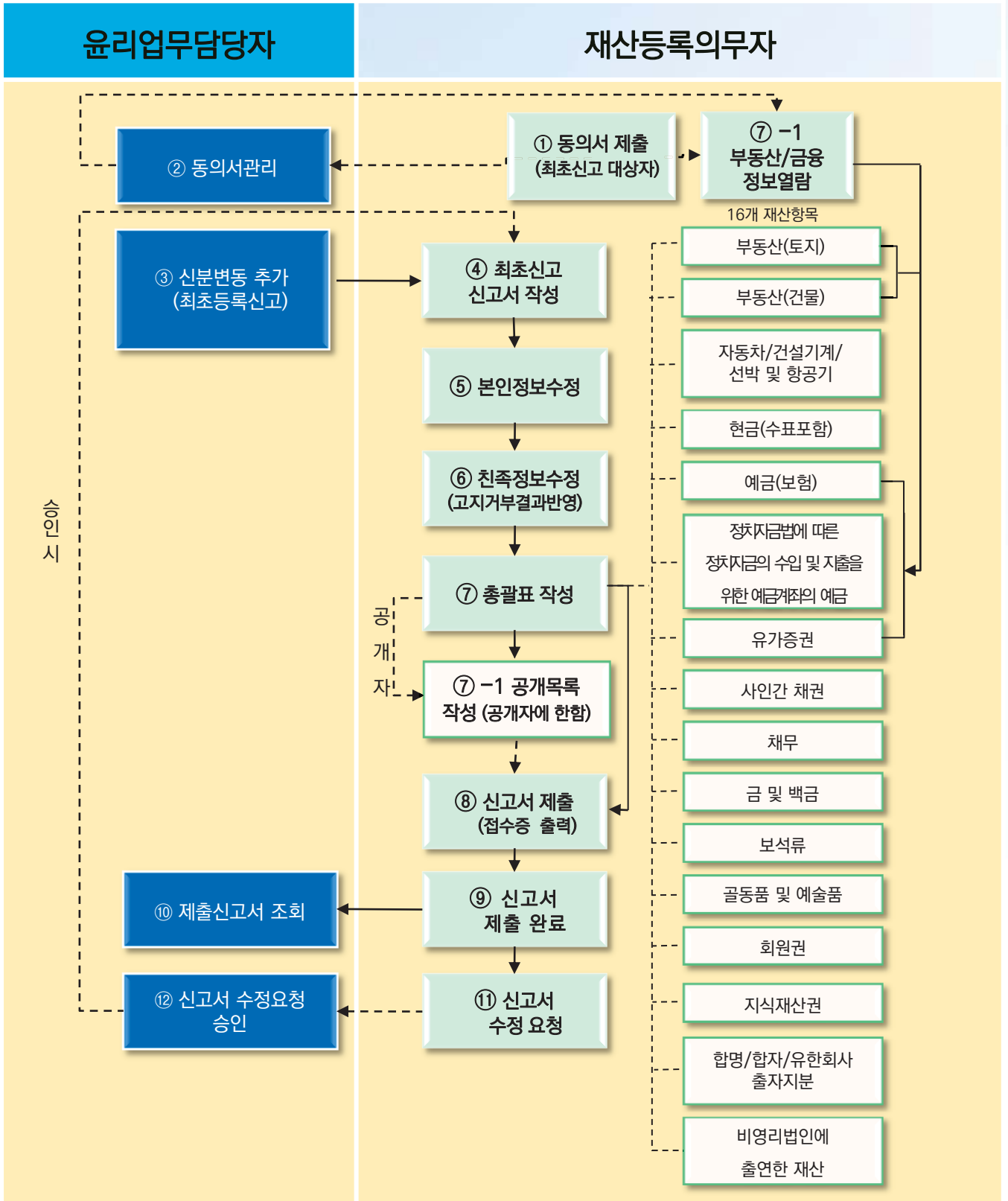
윤리업무담당자
재산등록의무자
① 동의서 제출 (최초신고 대상자)
② 동의서관리
③ 신분변동 추가 (최초등록신고)
④ 최초신고 신고서 작성
⑤ 본인정보수정
⑥ 친족정보수정 (고지거부결과반영)
⑦ 총괄표 작성
⑦ -1 공개목록 작성 (공개자에 한함)
⑧ 신고서 제출 (접수증 출력)
⑨ 신고서 제출 완료
⑩ 제출신고서 조회
⑪ 신고서 수정 요청
⑫ 신고서 수정요청 승인
승인 시
공개자
⑦ -1 부동산/금융 정보열람
16개 재산항목
부동산(토지)
부동산(건물)
자동차/건설기계/ 선박 및 항공기
현금(수표포함)
예금(보험)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유가증권
사인간 채권
채무
금 및 백금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회원권
지식재산권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Ⅱ. 최초신고서 작성방법 : 공직윤리시스템 접속 방법

☐ URL : https://www.peti.go.kr/

① '재산등록' 클릭

② 공인인증서 또는 SMS휴대전화 로그인

- 공인인증서 : 처음 사용하는 경우(PC가 바뀐 경우) 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함.
- 휴대전화번호 로그인 : PETI시스템에 등록된 휴대번호만 가능

Ⅱ. 최초신고서 작성방법 : 메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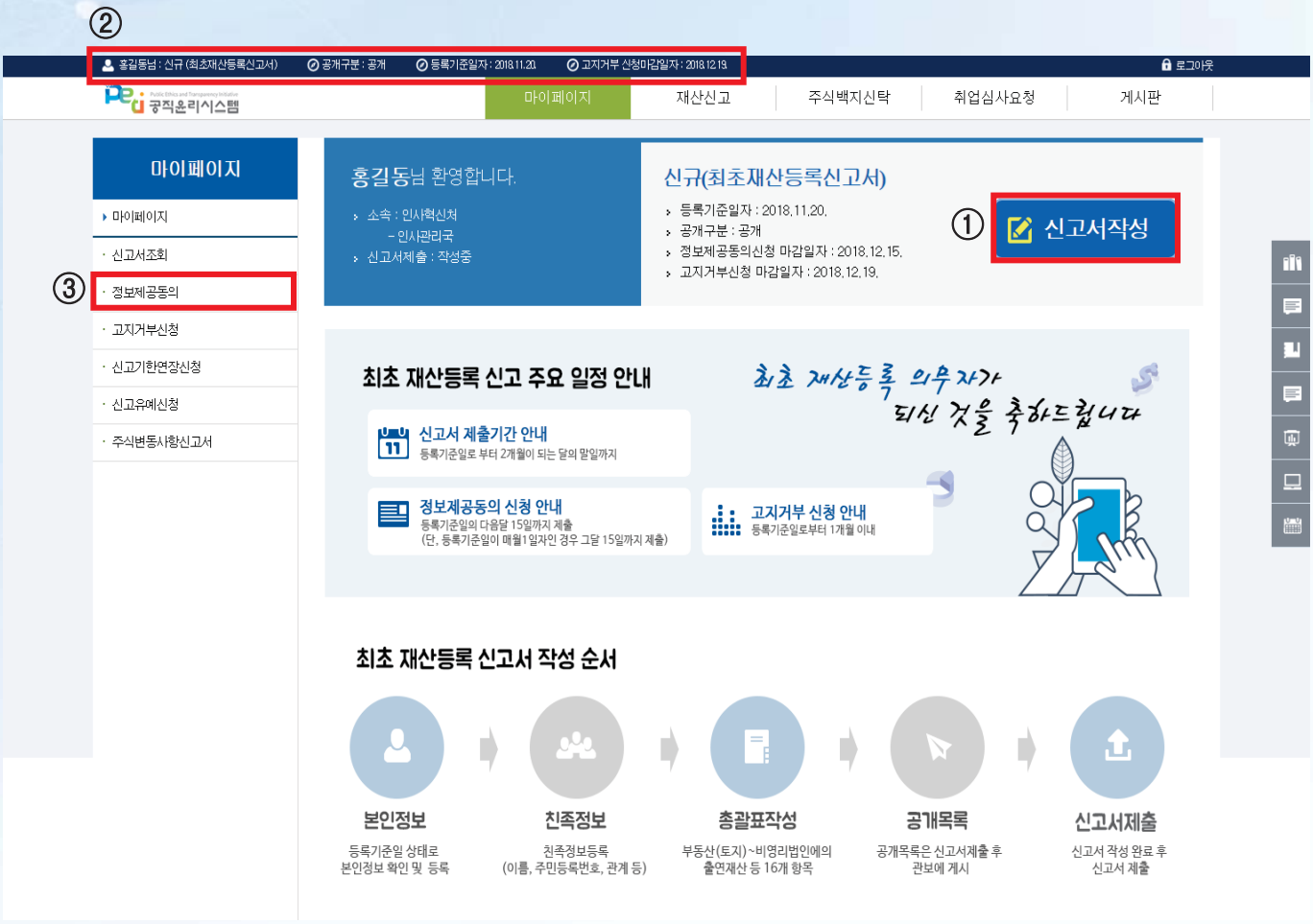

① [재산신고]메뉴 또는 화면 중앙의 신고서작성 클릭하여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

- 최초신고서가 존재할 경우 “본인정보입력” 작성화면으로 이동함.

② 신고서제출 마감일 확인가능

③ 신고서 작성 전 정보제공동의를 통해 부동산, 금융 정보제공 요청 필요

Ⅱ. 최초신고서 작성방법 : 정보제공 동의신청

□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 [마이페이지] 또는 [재산신고]→[친족정보]→[정보제공동의]에서 정보제공 동의/철회 신청 및 현황 확인 가능

○ 동의서 제출 방법

① **친족추가** 를 클릭하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정보를 입력하여 추가

② '정보제공 동의신청'의 목록 중 동의하고자 하는 친족과 정보제공 항목(금융, 부동산)을 체크(☑)

③ **동의서 내려받기** 를 출력하여 등록의무자와 친족의 동의확인 서명을 반드시 기재 후 스캔 하여 PDF 파일로 저장, 첨부 후 **동의서 제출** 을 클릭하여 '금융 및 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 제출

④ 동의자 명단은 정보제공 동의/철회자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철회서 제출 방법**

⑤ '정보제공 동의/철회자 제출명단'에서 철회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친족과 철회 항목(금융, 부동산)을 체크(☑) 한 후 철회사유 작성

⑥ 철회서 서식 다운 을 출력하여 등록의무자와 친족의 철회확인 서명을 반드시 기재 후 스캔 하여 PDF 파일로 저장, 첨부 후 철회서 제출 을 클릭하여 '금융 및 부동산정보제공'철회서 제출 (철회 완료 된 친족은 '정보제공 동의/철회자 현황'에서 확인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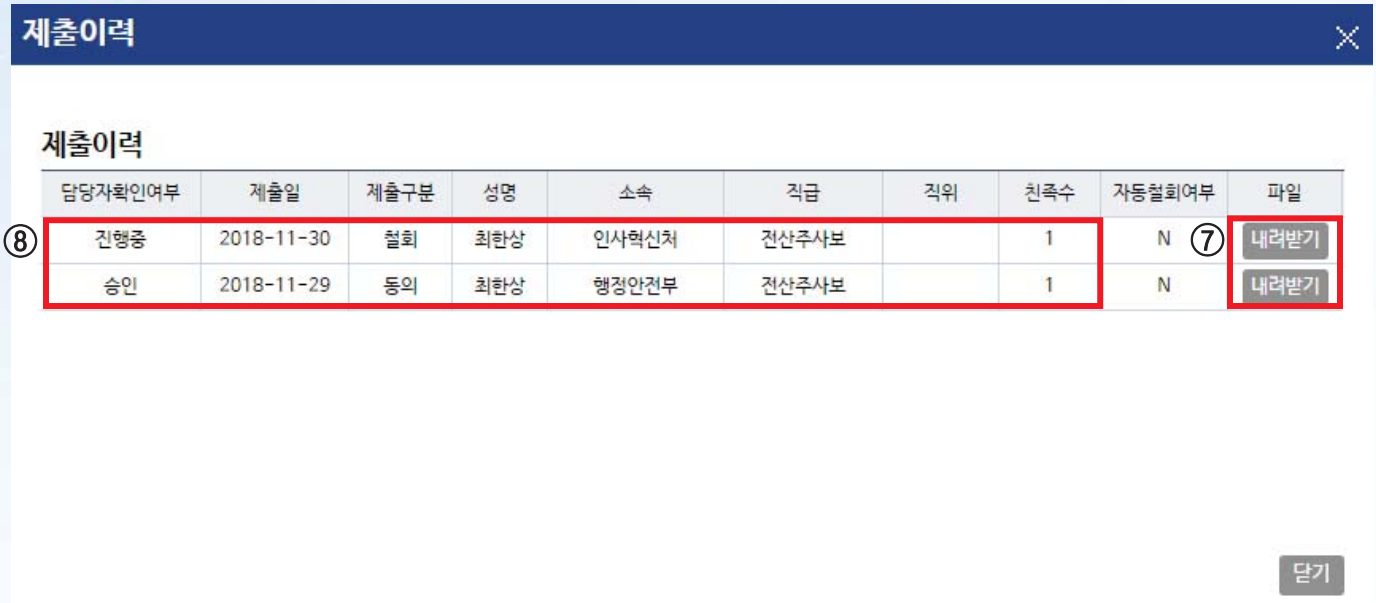

○ **동의/철회서 제출 이력 확인**

⑤ '정보제공 동의/철회자 제출명단'에서 대상자의 친족 클릭하여 제출이력 확인

⑦ 내려받기 클릭하여 이력에 첨부한 파일을 다운로드 가능

⑧ 목록을 클릭하여 상세정보 조회 가능

Ⅱ. 최초신고서 작성방법 : 본인정보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19.02.27. 시점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한글 : 채승기 ① 한자 : 債承基
주민등록번호	701124 - 0000000
소속	대표소속 : 행정안전부 상세소속 : 기획조정실 국제행정협력관 선택하기
직급 (필수)	1급 선택하기 ②
직위	직위테스트 ※ 예 : 윤리정책과장
자택주소 (필수)	도로명주소 06316 주소찾기 ③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3 동 호 (개포동 , 우성6차아파트) ※ 지번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58 -1 우성6차아파트
관리형태 (필수)	④ 자가
직장주소 (필수)	도로명주소 03186 주소찾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동 호 (세종로 , 광화문빌딩)
연락처	자택 --선택-- - ※ 해외거주자일 경우 기타 선택 직장 --선택-- - ※ 해외거주자일 경우 기타 선택 ⑤ 휴대전화 (필수) 010 1234 - 1234 ※ SMS수신을 위해 현행화 하여 기재 전자우편 (필수) mail @ naver.com 네이버

⑥ 저장 ⑦ 다음

□ 최초신고서 작성의 첫 번째 단계로, 등록기준일 현재 등록의무자의 성명(한자), 상세소속, 직급, 직위, 자택주소 등 본인의 신상명세를 작성((필수) 표시는 필수입력사항)

- 등록의무자의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일, 신고서 종류, 소속, 공개구분, 신고구분의 정보가 잘못된 경우, 소속기관의 윤리업무담당자에게 정정요청

① 한 글자씩 한글 입력 후 키보드 [한자]키로 한자 전환

② 선택하기 버튼으로 직급 검색하여 입력하고 직위는 직접 입력

③ 자택주소와 직장주소를 주소찾기 검색버튼을 통해 입력

구 분	처리방법
도로명주소가 있는 국내 주소지	주소찾기 로 검색 후 선택
국외에서 거주 시	[국외]로 선택 후 주소를 직접 입력
도로명주소가 없거나, 국가중요시설	[기타]로 선택 후 주소를 직접 입력

④ 거주형태는 자가 · 전 월세 · 기숙사 ·관사 · 친척집 · 기타에서 해당 거주형태 선택

⑤ 연락처 현행화하여 기재

⑥ 작성완료 후 저장 클릭하여 내용 저장

⑦ 다음 클릭하여 [친족정보수정] 단계로 이동

II. 최초신고서 작성방법 : 친족정보수정

재산신고 ▸ 친족정보입력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18.04.02. 시점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등록대상 친족보기]
- 친부모가 아닌 계부(새아버지), 계모(새어머니), 양부모, 계자녀,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결혼한 딸 등은 대상이 아님

* 대상자를 선택하면 친족정보 변경이 가능합니다.

② [추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리형태	직업	고지거부(기간)	등록대상	정보제공동의	
								부동산	금융
③ 배우자	안**정	750708-	기타주소	자가	배우자		☑	동의	동의
장남	원**재	070719-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01동 101호 (세종로, 광화문빌딩)	자가	장남		☑	동의	동의
장녀	원**효	040519-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01동 101호 (세종로, 광화문빌딩)	자가	장녀		☑	동의	동의

직계 존속·비속 중 다음 사유에 해당하시면 해당란에 체크해 주세요.

④

※직계존속(부모) 중 사망하신 분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체크	☐ 부 ☐ 모
※배우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다음 사항 중 하나를 체크	☐ 미혼 ☐ 이혼 ☐ 사별
※자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록대상 자녀없음에 체크	☐ 등록대상 자녀없음

미등록 친족

①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융동의(철회)서		부동산동의(철회)서		비고
			처리상태	제출일	처리상태	제출일	
부	원**용	460508-	동의	2018-04-23	동의	2018-04-23	[미등록친족추가]
모	최**애	501016-	동의	2018-04-23	동의	2018-04-23	[미등록친족추가]

[이전] [다음]

□ 친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현황 및 수정

○ 친족현황

① 친족현황에 등록되지 않았으나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친족으로, 확인 후

클릭하여 친족에 추가

②

클릭하여 친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인적사항을 작성

※ 직계존비속이 고지거부 대상이라도 우선 친족정보는 등록해야 함

※ 사망, 출가 등의 친족은 등록하지 않음

③ '친족목록'에서 친족을 클릭하여 친족 인적사항을 수정

④ 내용 확인 후 해당되는 내용에 체크

※ 직계존속(부모)중 사망하신 분이 있는 경우 [부/모]란에 체크

※ 배우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이혼/미혼/사별]란에 반드시 체크

※ 출가 등록대상 자녀가 없는 경우 [등록대상 자녀없음]란에 반드시 체크

- 최초신고 등록기준일 이전에 혼인(신고)한 딸의 경우 등록하지 않음

Ⅱ. 최초신고서 작성방법 : 친족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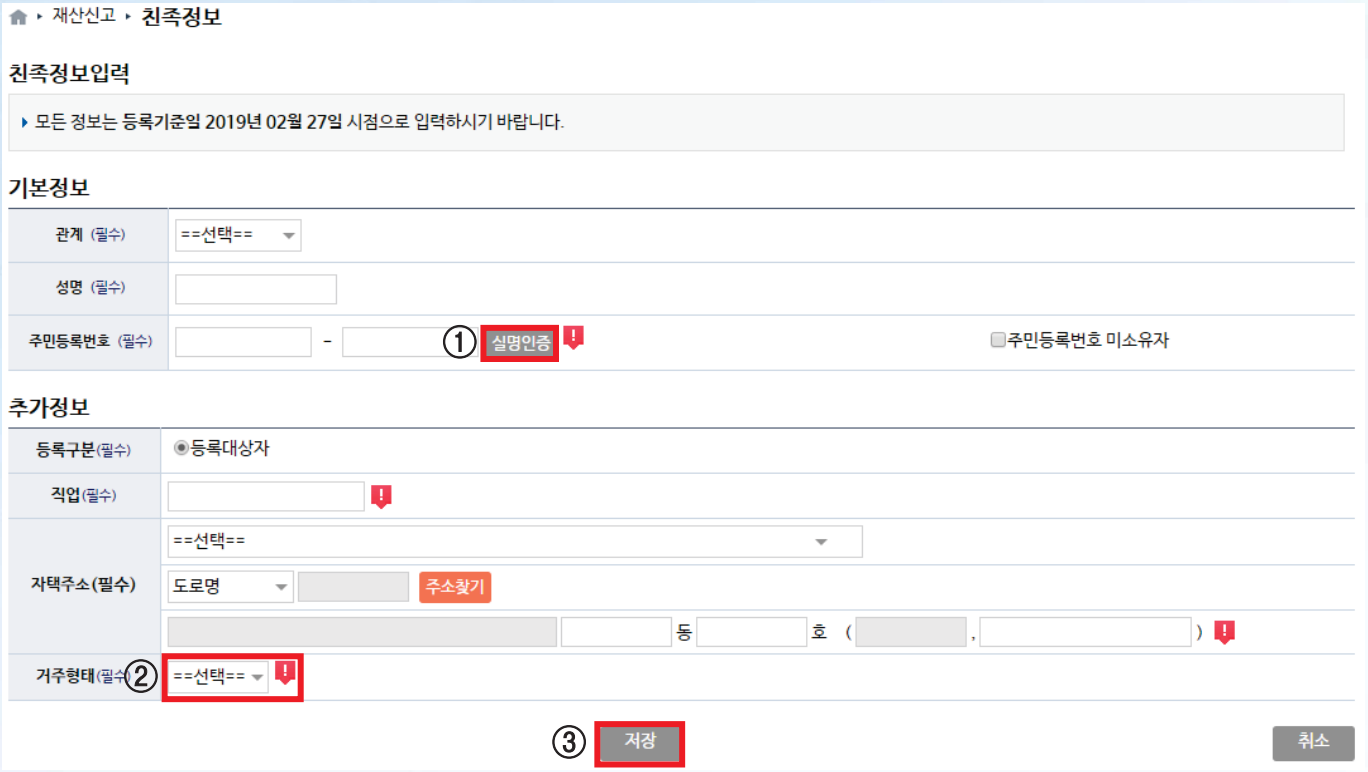

□ 등록의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직업 및 거주형태 등의 인적 사항 입력((필수)표시는 필수입력사항)

- 손 · 자녀가 있을 경우 아들을 먼저 등록 후 손 · 자녀 추가

① 친족추가 시 실명인증 을 해야 하며, 미 실행 시 신고서 작성 진행 불가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를 등록

※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0000000으로 등록

※ 예: 1980.08.14인 재외국인 자녀는 800814-0000000으로 등록

② 관리형태는 자가 · 전 월세 · 기숙사 ·관사 · 친척집 · 기타에서 해당 거주형태 선택

③ 정보 입력 후 저장

인증결과	내 용	이미지
성 공	실명인증 성공	600501 - ******* 실명 인증 인증성공
오 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외국인 포함)	600501 - ******* 실명 인증 성명오류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경우	600501 - ******* 실명 인증 주민등록번호오류

Ⅱ. 최초신고서 작성방법 : 고지거부 자가진단

재산신고 ▸ 친족정보입력 ▸ 고지거부자가진단

• 고지거부 자가진단은 셀프 검증 서비스이므로 진단 결과와 실제 신청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자 기준	○ 정기변동신고대상자 고지거부 [신규신청자] ○ 수시(최초, 퇴직, 의무면제)신고자 및 재심사 신청자						
*고지거부 사유	선택	*현 주거지 구분	선택	*가구원수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선택	소득기준(월)	0(천원)

※ 소득액은 세금 공제 전 총소득액 기준(천원단위 미만은 절사) / ※임대소득은 (월) 소득, 그외 근로/연금/사업/금융/기타소득은 (년) 소득을 입력해 주세요.

총 소득 (일반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0(천원)
일반소득	▶ 소계(일반소득 월 환산액)			0(천원)
	근로소득(년) !	0 (천원)	월 소득환산	(천원)
	임대소득(월) !	0 (천원)	월 소득환산	(천원)
	연금소득(년)	0 (천원)	월 소득환산	(천원)
	사업소득(년) !	0 (천원)	월 소득환산	(천원)
	금융소득(년)	0 (천원)	월 소득환산	(천원)
	기타소득(년)	0 (천원)	월 소득환산	(천원)
	농업소득 경지면적(㎡)	0 (㎡)	농업소득 월 소득환산	(천원)
재산소득	▶ 소계(재산소득 월 환산액)			0(천원)
	부동산 및 금융자산	0 (천원)	월 소득환산	(천원)
	소득환산율(기준일 CD금리)	2.12 (%) 금융투자협회 채권금리에서 기준일 CD금리 확인 : http://www.kofiabond.or.kr		

고지거부 자가진단하기

□ 고지거부 신청전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고지거부대상인지 쉽게 확인 가능

Ⅱ. 최초신고서 작성방법 : 고지거부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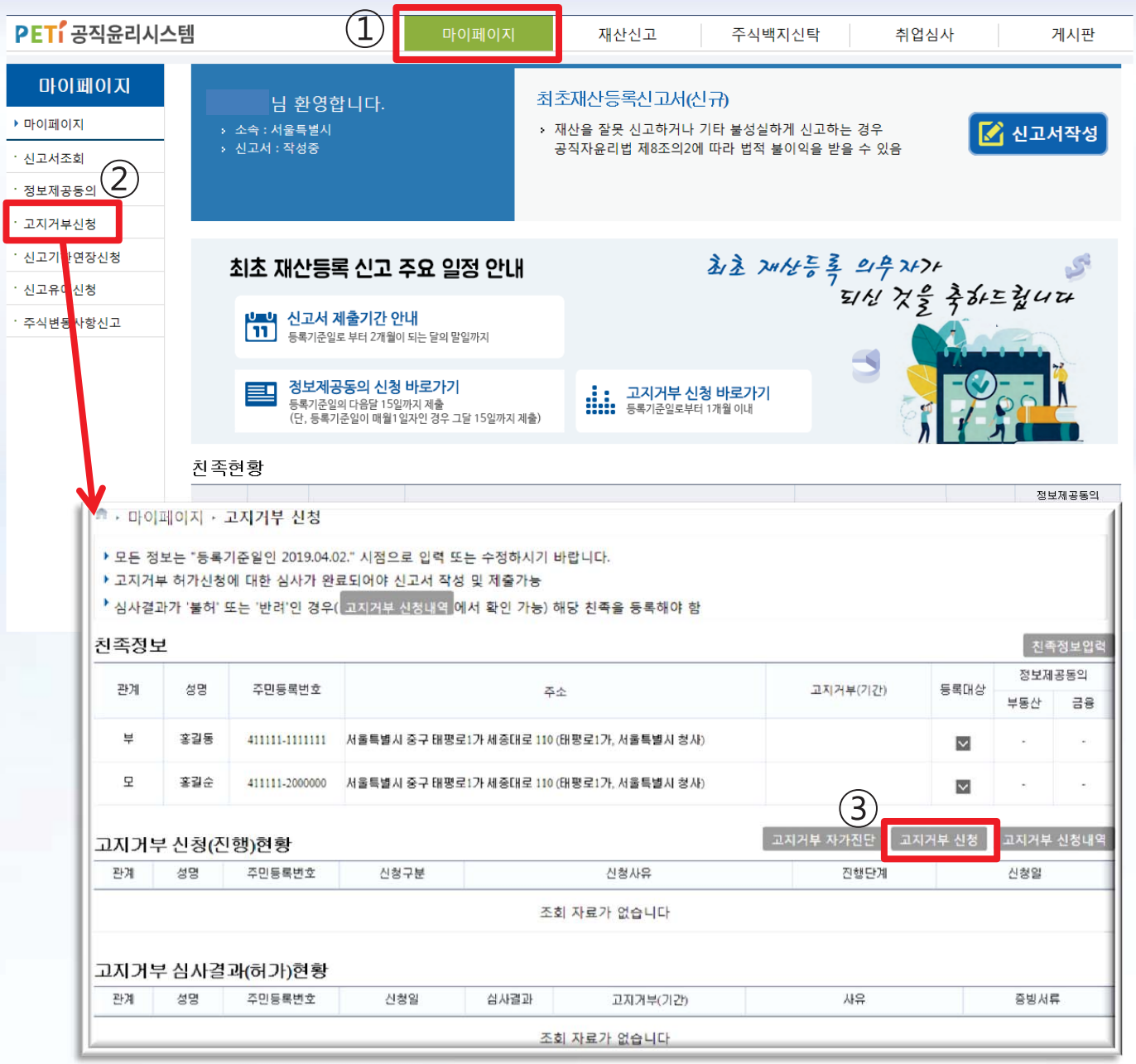

□ 고지거부 신청시 '고지거부 신청서', '인정소득 증명자료',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는 필수제출서류임.

④ 친족에서 추가 : 고지거부 대상자 선택

⑤ 고지거부 사유 선택

⑥ 서식다운로드

⑦ 고지거부신청서 항목에 추가

⑧ 소득증빙 (소득금액증명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첨부

⑨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첨부

⑩ “저장”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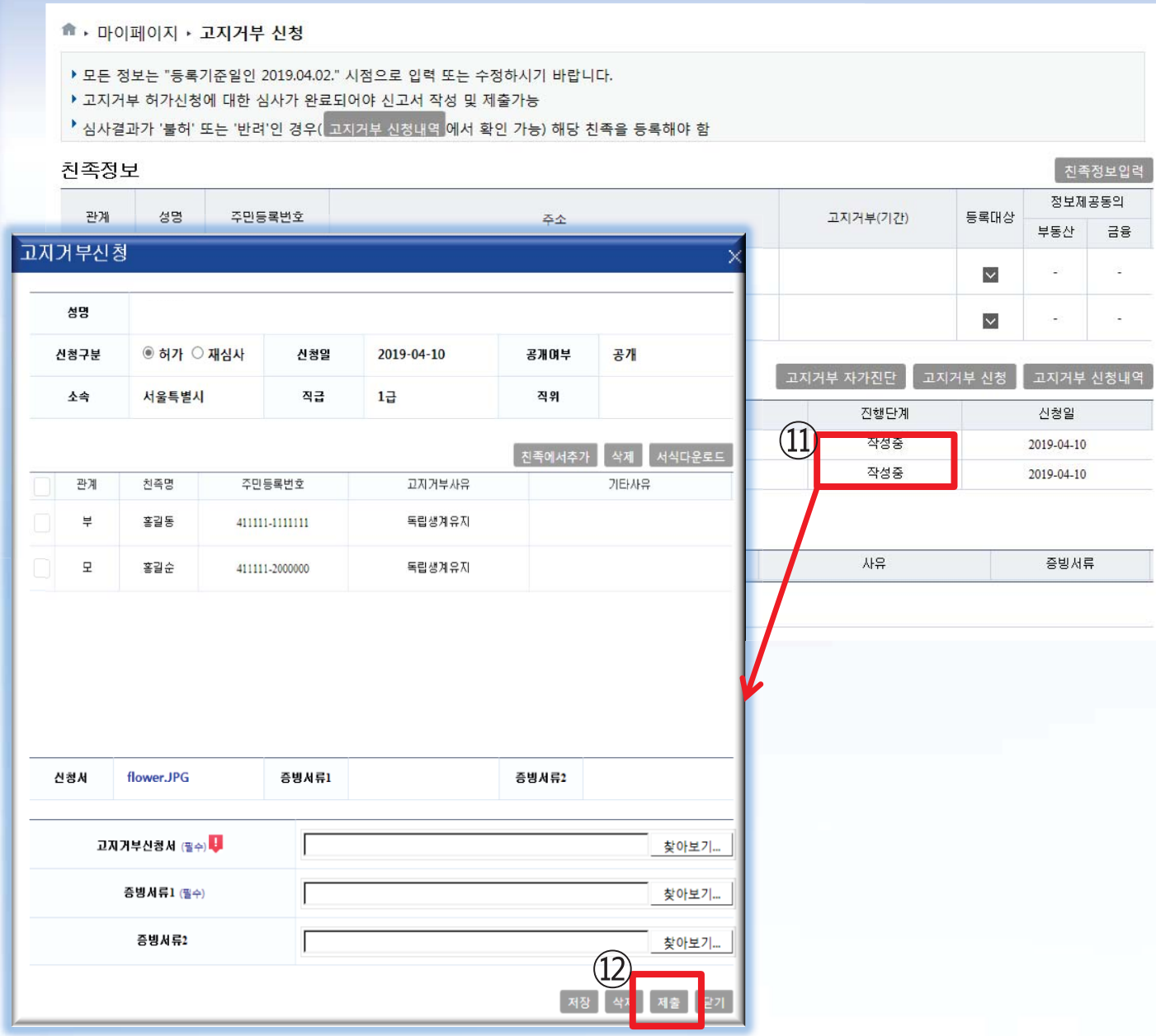

⑪ 고지거부 신청 화면에서 “진행단계”의 “작성중” 클릭

⑫ “제출” 버튼 클릭

※ 진행단계가 반드시 “제출완료” 임을 확인

Ⅱ. 최초신고서 작성방법 : 재산신고 주요 실수사례

□ 재산신고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로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재산신고 시 참고

① 내려받기 클릭하여 재산신고 주요 실수 사례 내용 저장 가능

Ⅱ. 최초신고서 작성방법 : 재산신고 메뉴

□ 재산등록을 시작하는 화면으로 재산등록의 순서는 무관하며, 16개의 재산항목 중 등록하고자 하는 항목만 클릭하여 입력

① 부동산(토지)부터 출연재산 총 16개의 재산항목 표시

② 부동산정보열람 클릭하여 부동산(토지)에 대해 등록의무자 본인 및 친족에 대한 부동산정보 조회내역 열람가능

- 등록기준일이 '19.6.30.인 등록의무자의 경우 '19.8.16.부터 열람가능」'19년 수시 재산신고자 사전 정보제공 추진일정」참조

※ 최초 입력 시 부동산 정보 열람하고 클릭만으로 주소정보 입력

③ 등록한 부동산(토지) 재산항목의 총액(가액합산금액) 확인

④ 미리보기 클릭하여 신고내역 미리보기 및 출력

⑤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추가 클릭

⑥ 신고된 재산을 변동 또는 삭제하는 경우 해당 재산항목 체크 후 삭제 클릭

⑦ 이전 클릭하면 이전 재산항목 이동 되고 다음 클릭하면 다음 재산항목으로 이동

Ⅱ. 최초신고서 작성방법 : 부동산정보열람

☐ 부동산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등록의무자 및 친족에 대한 부동산 정보 열람

- 부동산에 대한 조회정보는 재산신고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

① 토지의 소유자성명, 조회기준일, 소재지, 면적과 공유자 수, 변동일자 확인

② 출력 클릭으로 열람자료 출력하여 부동산 재산 등록 시 활용

Ⅱ. 최초신고서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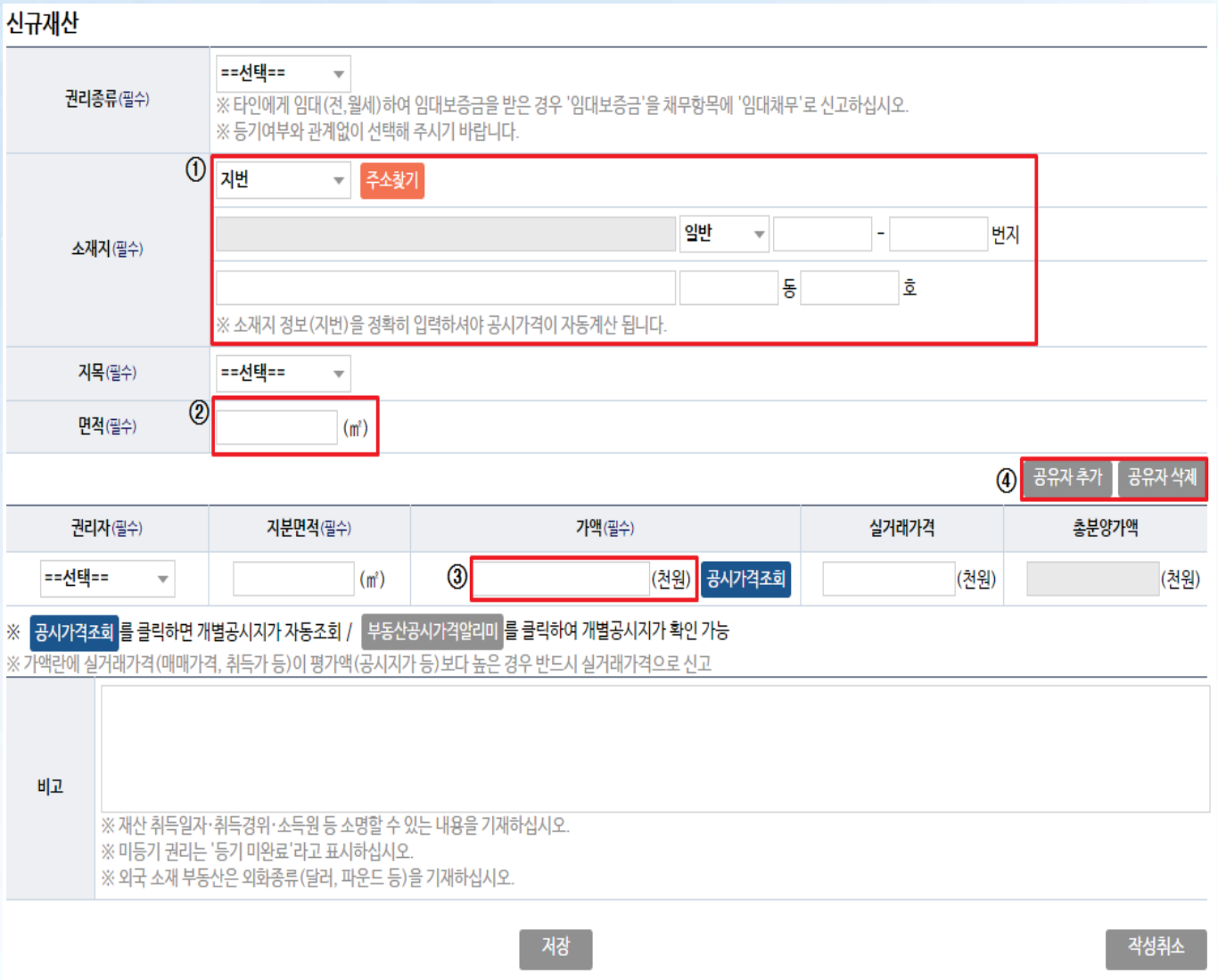

□ 등록의무자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친족의 부동산(토지)재산을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임차)권 등으로 모두 등록

- 권리자, 권리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가액을 입력((필수)표시는 필수입력사항)

Ⅱ. 최초신고서 작성방법 : 토지

① 소재지는 주소찾기 클릭하여 읍/면/동/리 조회 후 상세주소 직접 입력

예) 소재지가 “경기도 안성시 공직면 청렴리 3-1번지”인 경우 : 주소찾기 클릭하여“청렴리”로 조회하여 선택한 후 상세주소 “3-1”은 직접 입력

※ 소재지 정보(지번)를 정확히 입력해야 개별공시지가가 자동계산 됨

② 면적 입력(단, 공동소유인 경우 공유지분에 체크 후 전체면적과 지분면적을 입력)

③ 가액은 공시가격조회 클릭하여 자동조회

- 소재지와 면적을 정확히 입력 후 공시가격조회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공시지가 계산” 팝업이 나타남

※ 공동소유인 경우 반드시 공유지분에 체크(☑)하고 전체면적과 지분면적 입력 후 공시가격조회 클릭

- 자동 조회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가액확인 후 확인 버튼 클릭하여 자동입력

※ “공시지가 계산”에서 자동조회되지 않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를 클릭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 후 가액을 직접 입력

Ⅱ. 최초신고서 작성방법 :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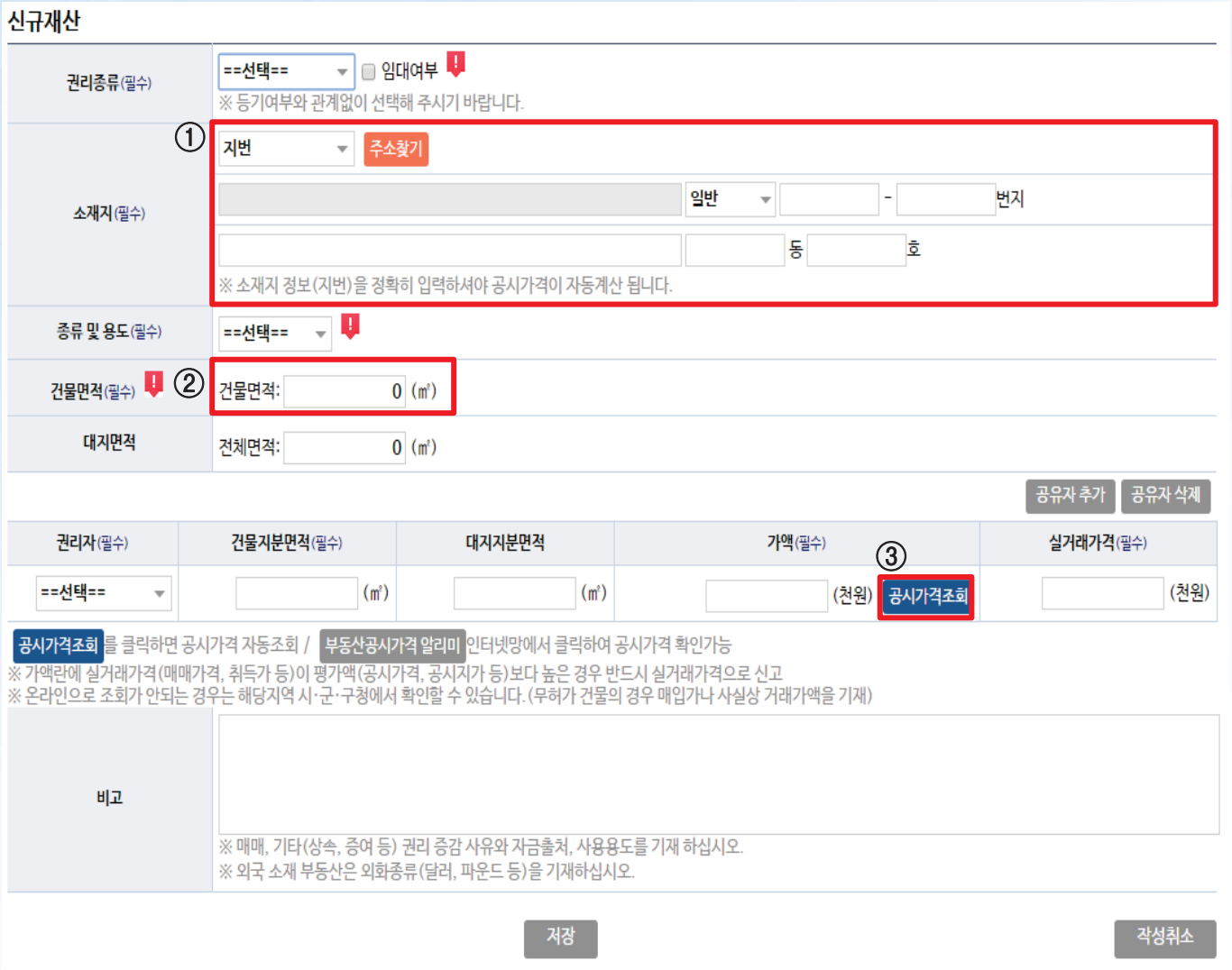

□ 등록의무자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친족의 부동산(건물)재산을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전세(임차)권, 분양권 등으로 모두 등록

- (필수) 권리종류, 소재지, 종류및용도, 건물면적, 권리자, 건물지분면적, 가액, 실거래가격 입력
-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항목에 토지와 건물을 같이 신고하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분리하여 신고
- 아파트는 건물면적만 기재

- 전세권(임차권)인 경우 가액란에 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으로 신고

※본인 소유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은 채무항목에 등록

- 무허가건물은 허가 또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등록

① 소재지는 주소찾기 클릭하여 읍/면/동/리 조회 후 상세주소 직접 입력

예)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서구 공직동 229-6번지 공직 에세스 빌"인 경우 : 주소찾기 클릭 후

"공직동"으로 조회하여 선택하고 상세주소 "229-6"번지와 "공직 에세스 빌"은 직접 입력

※ 소재지 정보(지번)와 종류 및 용도를 정확히 입력해야 공시지가가 자동계산 됨

② 종류 및 용도 입력

③ 가액은 공시가격조회 클릭하여 자동조회

- 소재지와 종류 및 용도를 정확히 입력 후 공시가격조회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주택가격 조회" 팝업창이 나타남

- 입력된 면적이 표시되며, 계산된 가액이 이상이 없을 경우 확인 클릭

※ "주택가격 조회"에서 자동조회되지 않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주택가격을 확인 후 가액을 직접 입력

※ 가액 산정방법

아파트 등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에서 고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 공시가격 조회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공시가격 자동조회 가능
단독주택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에서 고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 조회 ✓ 공시가격 조회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공시가격 자동조회 가능
분양아파트	✓ 등록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을 가액으로 신고
그 외 건물(상가, 빌딩,오피스텔등)	✓ 토지의 가액(개별공시지가 × 면적) + 건물가액 ※ 건물가액은 국가(국세청 기준시가) 또는 지자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중 최고가액 ※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Ⅱ. 최초신고서 작성방법 : 자동차 · 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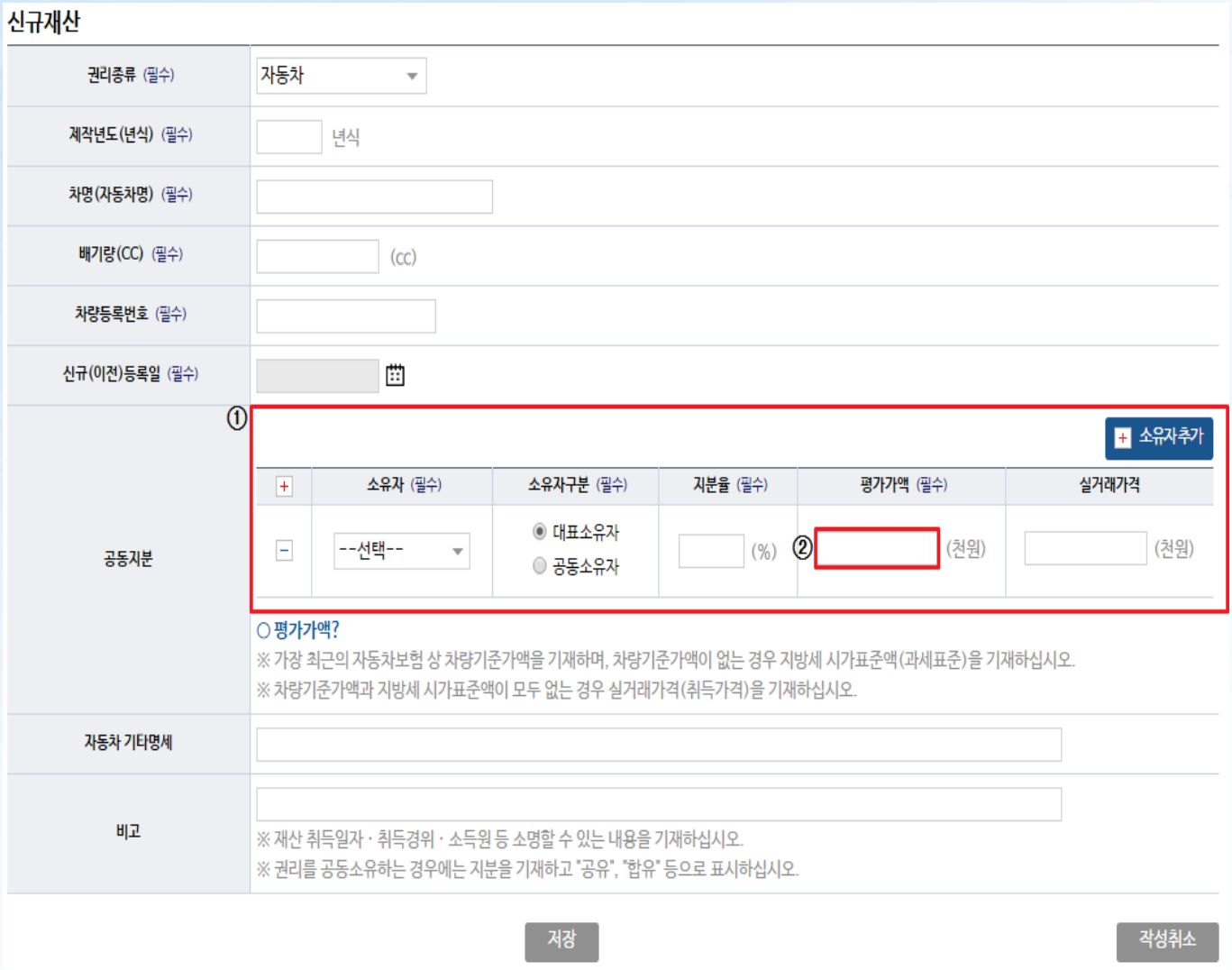

□ 등록의무자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친족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재산을 등록

- (필수) 권리자, 권리종류, 제작연도, 차명, 배기량, 차량등록번호, 신규(이전)등록일, 평가가액 등 입력

① 공동소유일 [+ 소유자추가] 클릭하고, 공동소유자 수와 지분율(소수점 이하 절사), 가액 입력

※ 등록대상 친족의 공동소유 재산일 경우 소유자 별 해당 지분에 대해 각각 신고

② 자동차의 평가가액은 자동차 보험상의 차량기준액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기준가액 등 평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차량의 실매입액을 기재

○ 자동차의 가액산정은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으로 신고.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지방세법시행령 제4조), 전문가평가액 순서로 가액을 확인하여 기재

○ 리스 자동차는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신고대상이 아님. 다만, 리스로 인한 채권, 채무는 신고대상임

※ 리스 보증금은 채권 란에, 리스 잔여 대금은 채무 란에 신고

○ 권리자, 권리종류, 제작연도(년 식), 차명(자동차명), 배기량(CC), 차량등록번호, 신규(이전)등록일, 소유여부, 평가가액, 비고를 입력

○ 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는 평가액(지방세 시가표준액, 전문가 평가액 등)으로 신고하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신고

○ 광업권, 어업권은 시가 표준액 또는 전문가 평가액을 신고

Ⅱ. 최초신고서 작성방법 : 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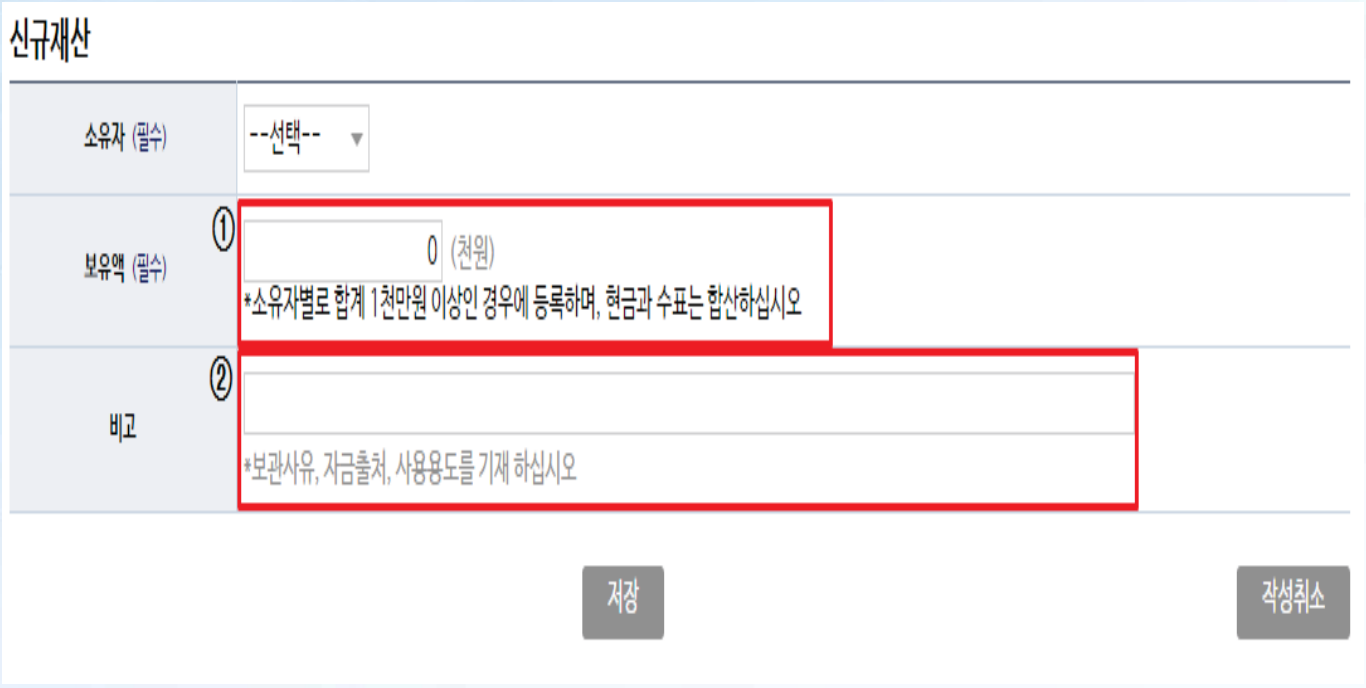

□ **등록의무자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친족의 수표를 포함한 현금 보유액이 소유자 별 합계액이 1천 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

- (필수) 소유자, 보유액, 비고 등을 입력

① 보유한 현금(수표포함)을"천원"단위로 입력

② 비고에 보관사유, 자금출처, 사용용도 등을 기재

II. 최초신고서 작성방법 : 예금·보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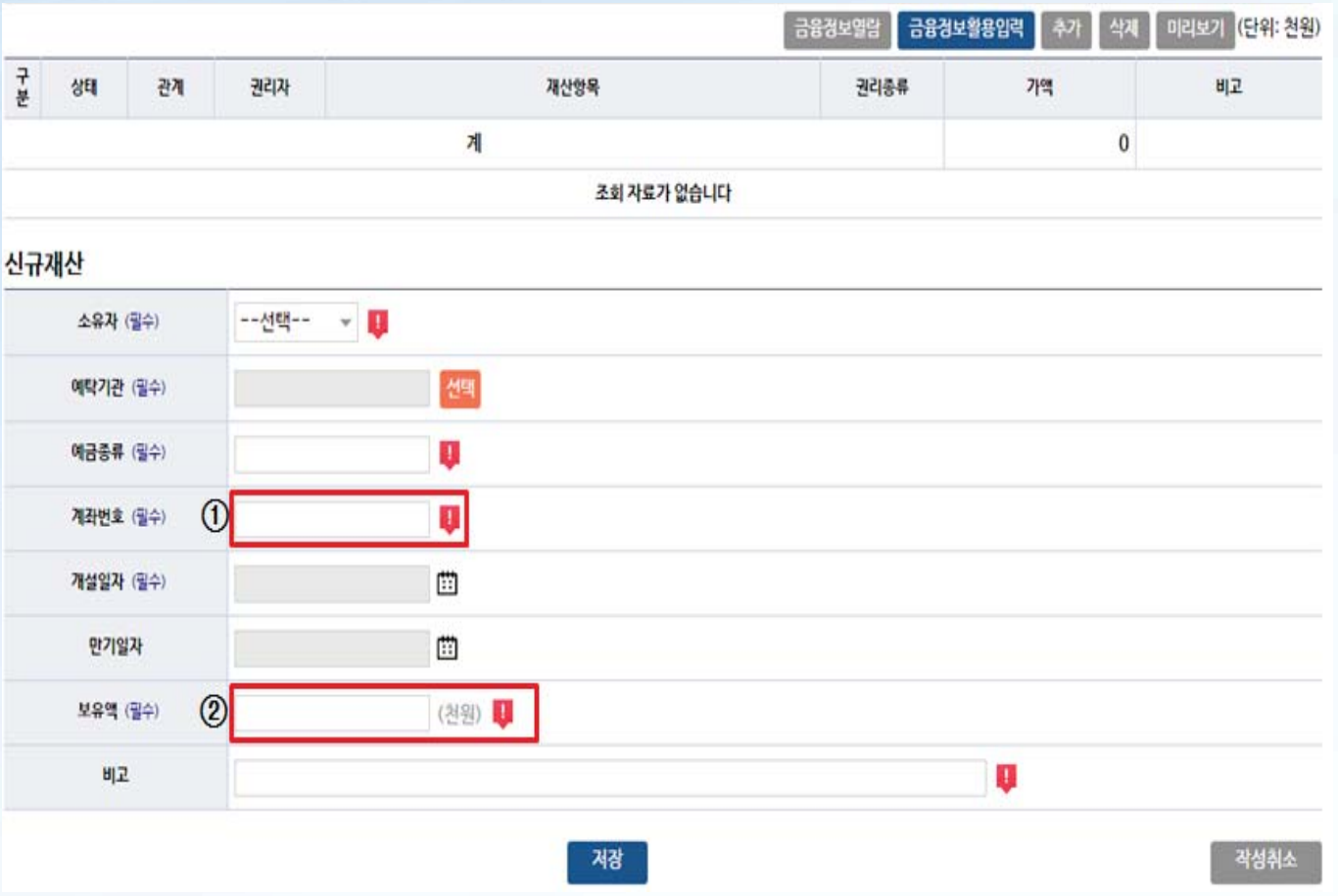

□ 등록의무자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친족의 예금·보험 등이 소유자별 합계액 1천 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계좌를 등록(계좌 별 1천 만원 미만도 포함)

- (필수) 소유자, 예탁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개설일자, 보유액 입력
- 간접금융상품(MMF, 수익증권, 뮤츄얼 펀드, 주가연계증권 ELS, CMA, MMDA), 유가증권 매수를 위한 예탁금은 예금항목에 등록
-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등록기준일 현재 예금잔액이 '+'이면 예금항목에, '-'이면 채무항목에 신고
- 봉급에서 자동 이체되는 장기저축(한국교직원공제회 등)등 적립성 예금과 보험도 신고대상
- 순수 보장성 보험(자동차보험 , 소멸성 보험 등)을 제외한 모든 보험은 신고대상이며, 보험 신고 시 등록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을 보유액으로 신고
- 외화예금은 등록기준일 시점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신고, 특이사항'란 에 현지 화폐단위 기재
- 보험 약관대출의 경우 채무 항목에 금융기관채무로 신고
- 사실상 등록대상자 소유가 아니더라도 등록대상자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친목회비, 동창회비, 개인사업자금 등 예금의 성격을 불문하고 등록한 다음 사실관계를'특이사항'란 에 기재
- 잔액이 10만원 이하인 예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됨 (제 150차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07.9.10)

① 계좌번호가 없는 경우"관리번호-일련번호"형태로 입력

② 예금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계좌 잔액으로 신고

수익증권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평가액으로 신고

보험의 경우 등록기준일까지의 불입액으로 신고

Ⅱ. 최초신고서 작성방법 : 금융정보활용입력

① 금융기관에서 회신 받은 자료를 이전에 신고한 자료와 비교한 계좌에 나타나 있는 자료들의 현재가액란은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금액이 표시됨

- 등록기준일자의 현재가액란에 표시된 금액이 실제 보유금액과 다를 경우 직접 현재가액(유가증권은 수량, 현재가액)란을 수정하여 입력

② 이전에 신고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회신되지 않은 계좌(외국은행, 비회신 기관 등)

- 비회신 계좌는 총괄표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

③ 모든 작업완료 후 일괄저장 버튼 클릭

④ 작성취소 버튼 클릭하면 현재 작업은 취소되고 예금/현금 등록 화면으로 이동

Ⅱ. 최초신고서 작성방법 : 정치예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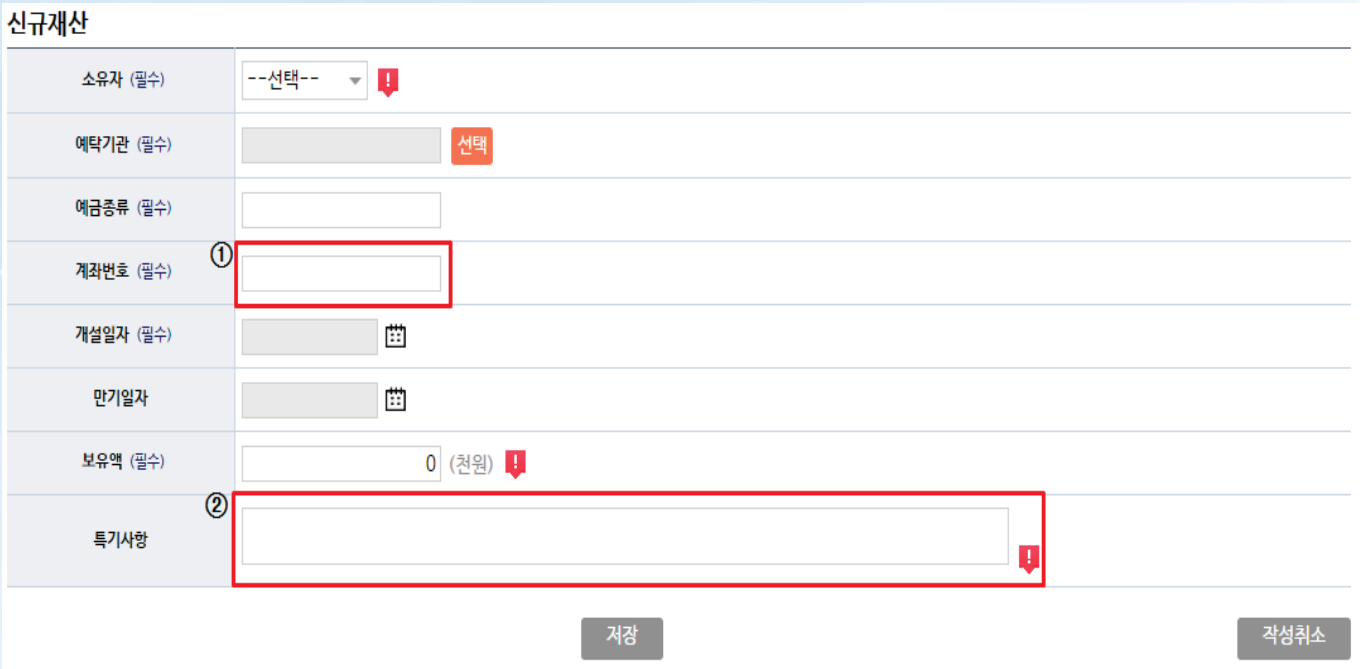

□ 소유자, 예탁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개설일자, 보유액, 비고를 입력

□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 이 가미된 보험(100%보장성 보험 제외), 수익증권(펀드 등), 금융기관에 투자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

① 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관리번호-일련번호”형태로 입력

② 특이사항란 에 해당계좌의 용도를 기재(수입용 또는 지출용)

□ 예금 항목에 같은 계좌번호가 존재 할 경우 저장 후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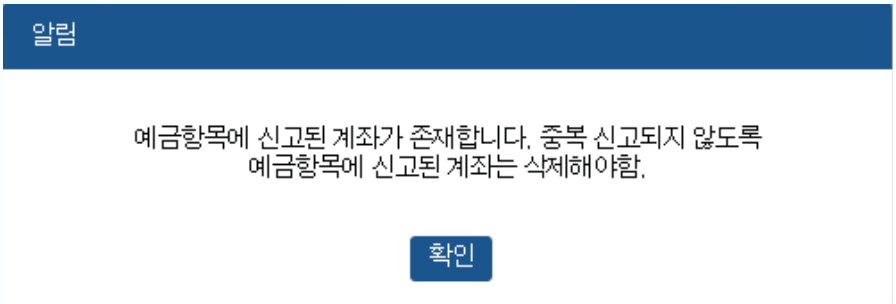

※ 예금 항목에 동일한 계좌가 있을 경우 중복 신고 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 후 예금항목에 신고 된 계좌는 삭제 처리 해야 함

Ⅱ. 최초신고서 작성방법 : 유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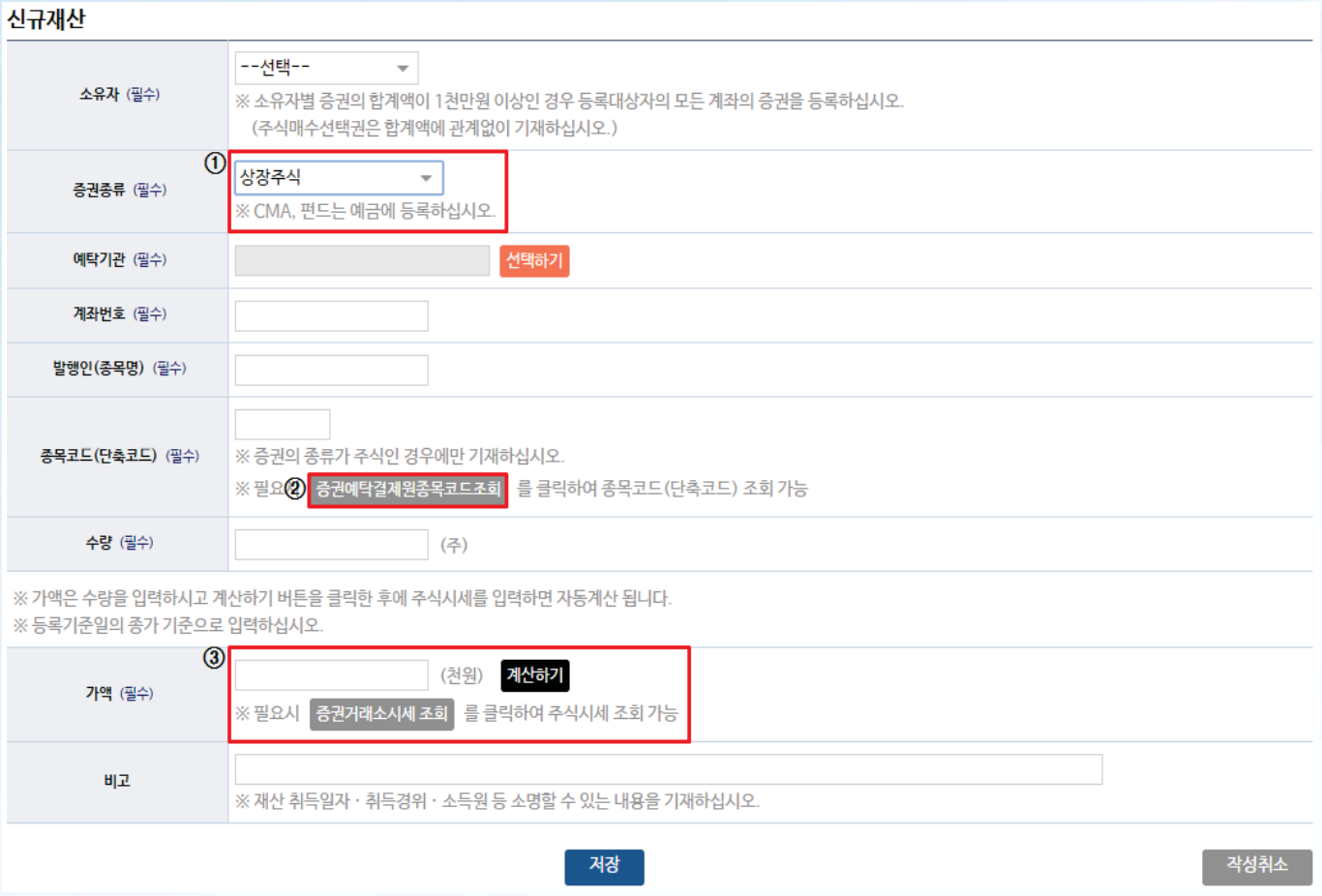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소유자, 증권종류, 예탁기관, 계좌번호, 발행인, 종목코드, 수량, 가액, 비고를 입력
-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신고하고, 수익증권(펀드 등)은 예금항목에 신고
- 보유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도 신고대상임

①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상장폐지된 주식), 국채, 공채, 회사채, 금융채, 백지신탁 등을 선택

② 상장주식인 경우 종목코드(단축코드)는 증권예탁결제원종목코드조회 클릭하여 확인

③ 상장주식인 경우 증권거래소시세조회 클릭하여 등록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을 조회,
계산하기 버튼으로 금액 자동 입력(수량×주식시세)

※ 비상장주식(상장前, 상장폐지)은 주권의 액면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K-OTC시장의 비상장주식은'거래량가중평균가'로 신고

Ⅱ. 최초신고서 작성방법 : 사인간 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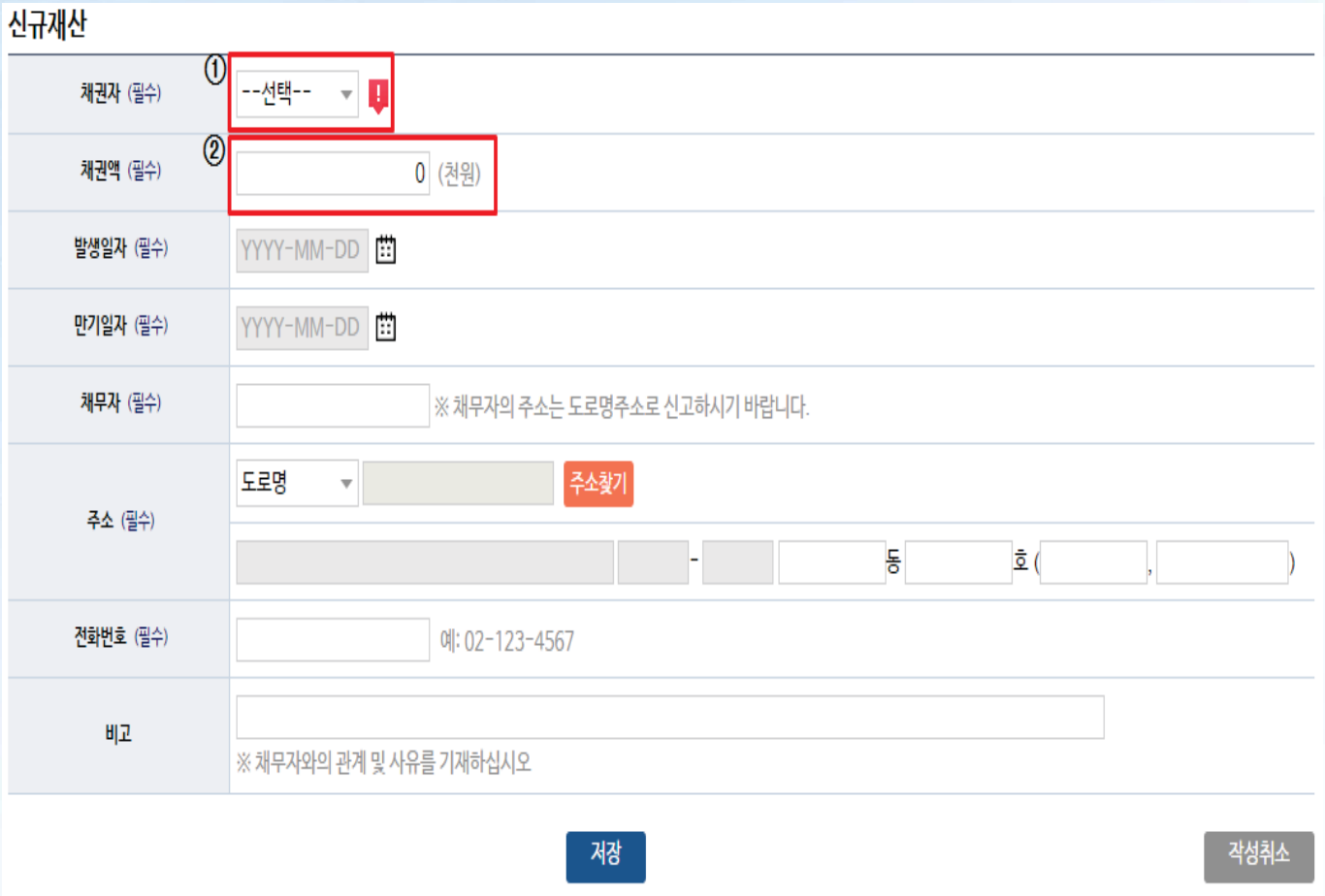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권을 신고**

- (필수) 채권자, 채권액, 발생일자, 만기일자, 채무자, 채무자주소, 전화번호, 비고를 입력
- 타인의 주택 점포 등 부동산에 설정한 전세(임차)권은 채권항목에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항목에 등록

① 채권자 선택

② 채권액은 (천 원)단위로 입력

Ⅱ. 최초신고서 작성방법 : 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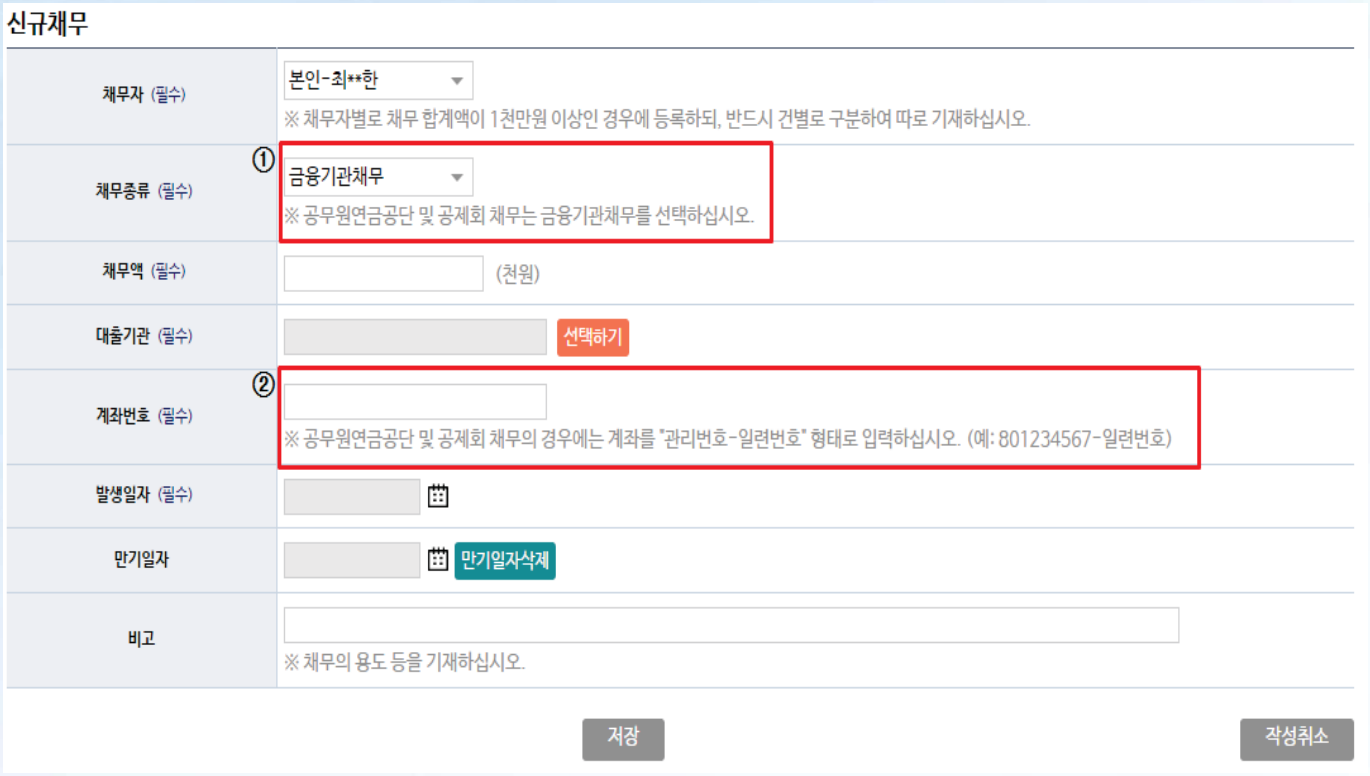

□ **등록의무자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친족의 채무가 채무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건별로 구분하여 모두 등록**

- (필수) 채무자, 채무종류, 채무액, 발생일자 등 입력

① 금융기관채무, 건물임대채무, 토지임대채무, 사인간채무 등을 선택

※ 채무종류에 따라 입력항목이 다르므로 해당하는 내용 확인 후 세부내용 직접 입력

※ 본인 또는 등록대상 친족 소유의 건물에 임대주고 전세보증금을 받은 경우 '건물임대채무'로 선택하여 신고

② 금융기관채무 입력 시 계좌번호가 없는 경우"관리번호-일련번호"형태로 입력

Ⅱ. 최초신고서 작성방법 : 금 및 백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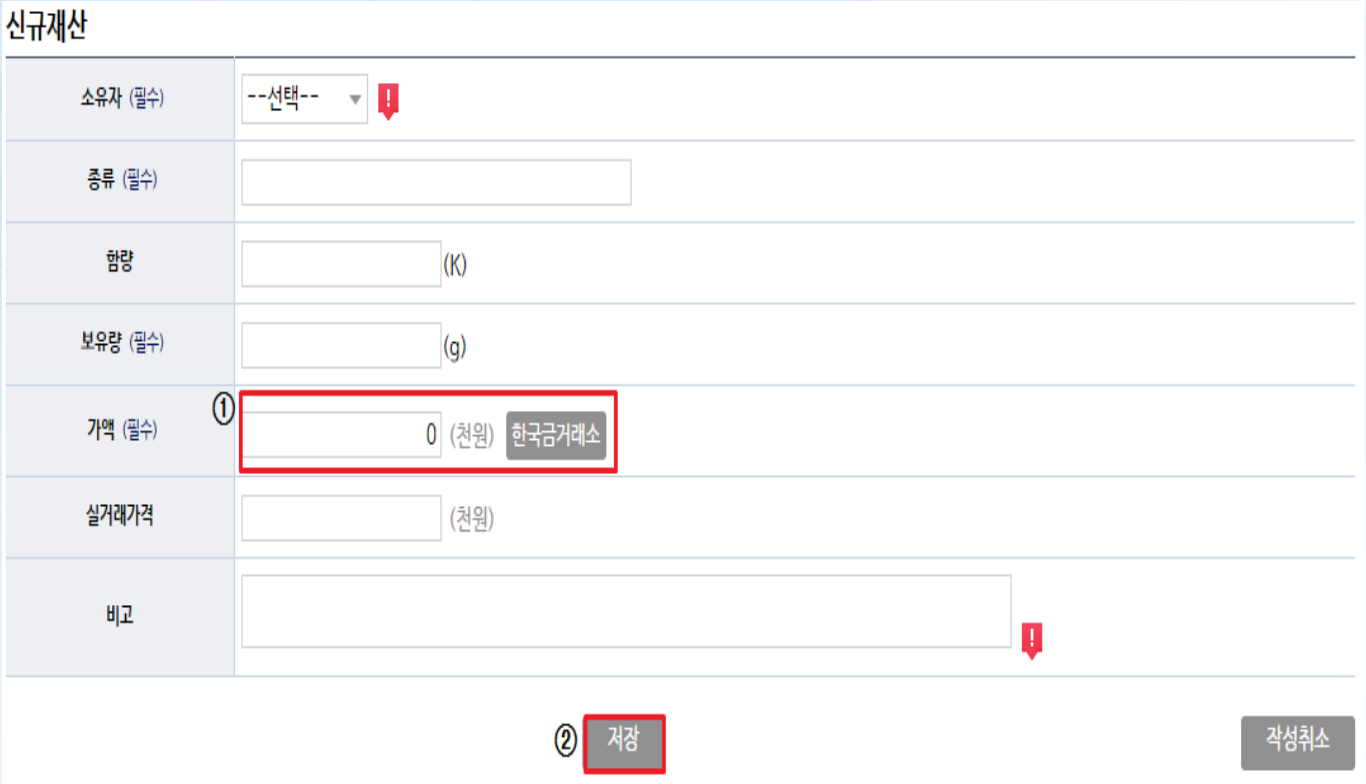

□ **소유자별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

- (필수) 소유자, 종류(금·백금(금제품 및 백금 제품 포함)), 보유량, 가액 등 입력

① '가액'은 등록기준일 기준 감정가 등 시장거래금액으로 산정

② 모든 작업완료 후 **저장** 클릭

Ⅱ. 최초신고서 작성방법 : 보석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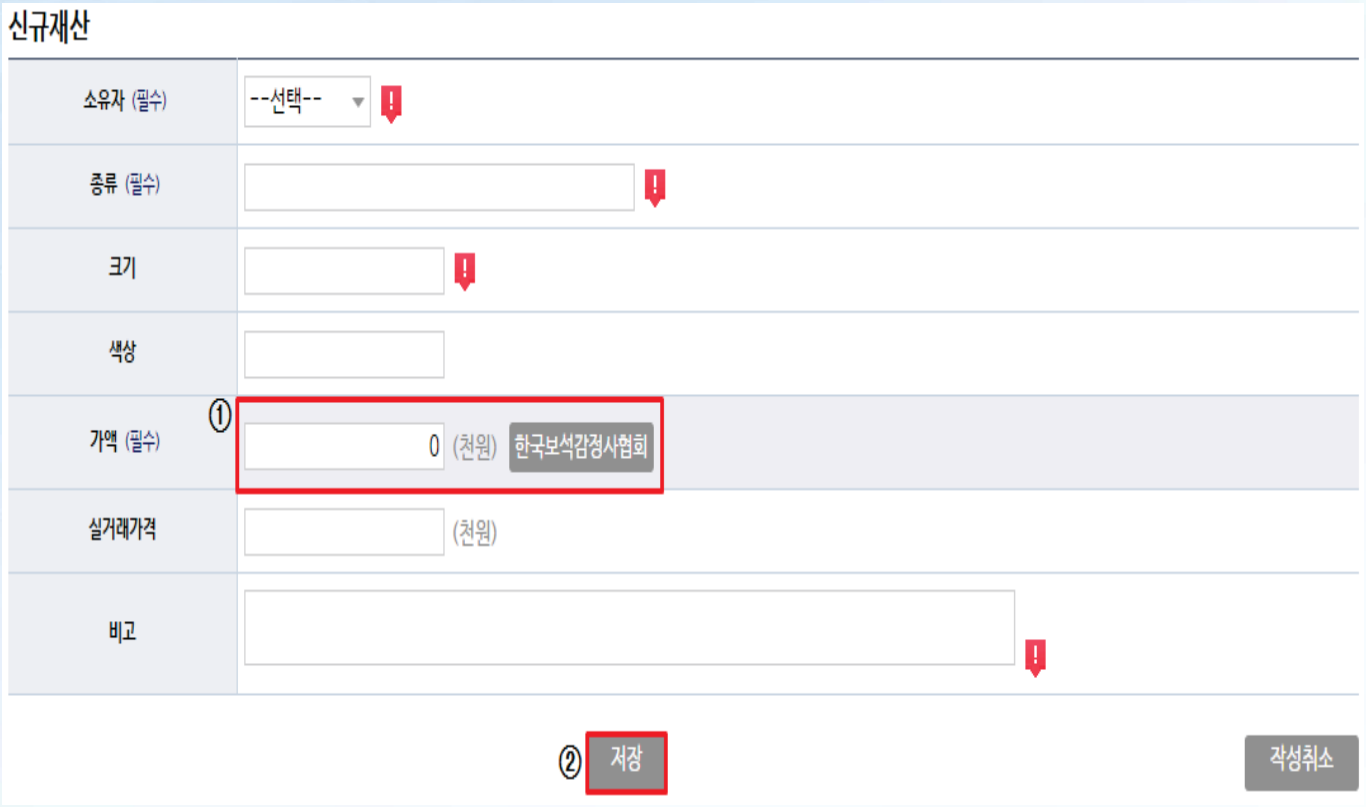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인 경우 등록

- (필수) 소유자, 종류(다이아몬드 등), 가액 등 입력

① '가액'은 등록기준일 기준 전문가 등의 평가액으로 산정,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산정

※'비고'란 에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기재

② 모든 작업완료 후 저장 클릭

Ⅱ. 최초신고서 작성방법 : 골동품 및 예술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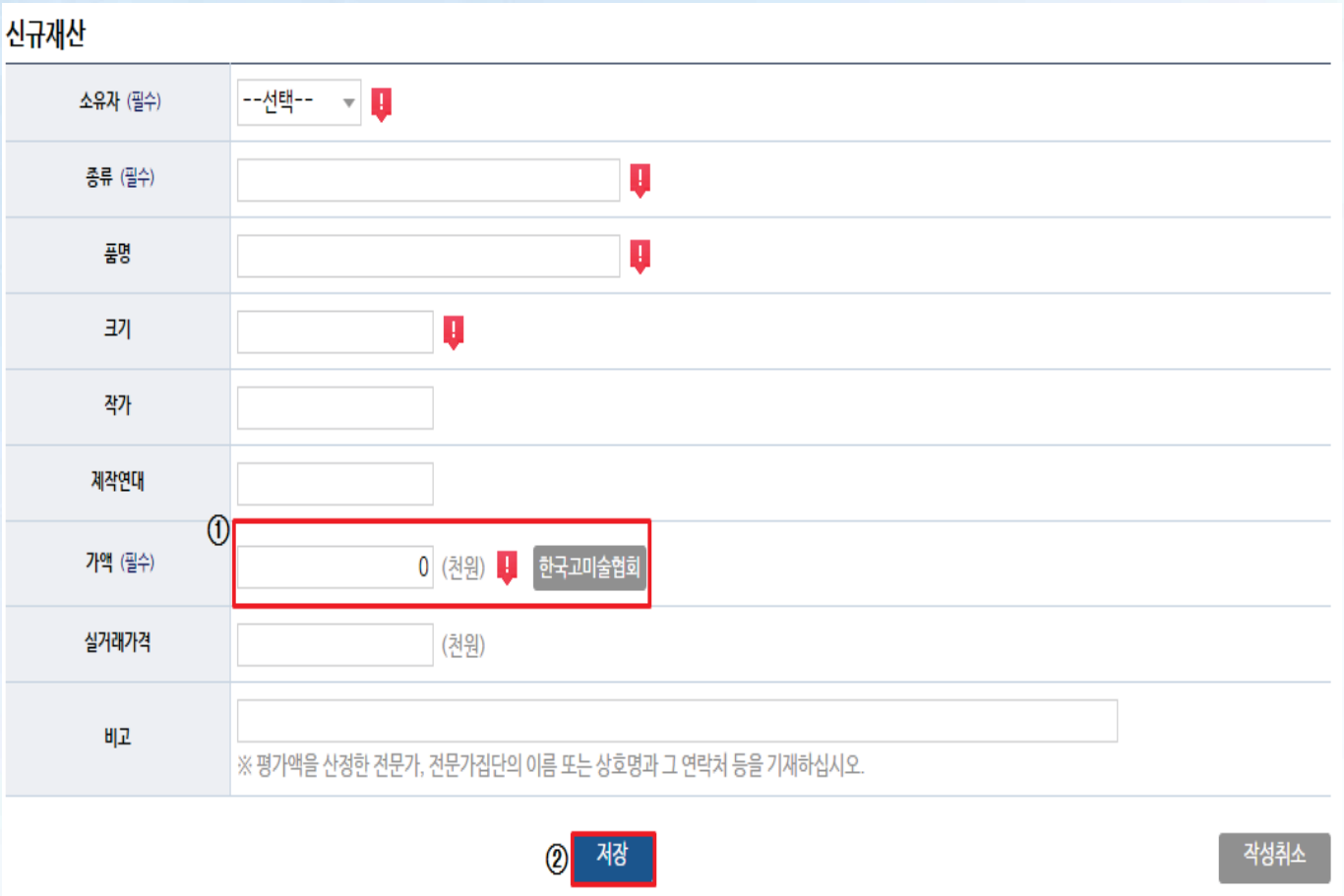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인 경우 등록**

- (필수) 소유자, 종류(도자기.회화), 가액 등 입력

① '가액'은 등록기준일 기준 전문가 등의 평가액으로 산정,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거래 가격으로 산정

※'비고' 란에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기재

② 모든 작업완료 후 저장 클릭

Ⅱ. 최초신고서 작성방법 : 회원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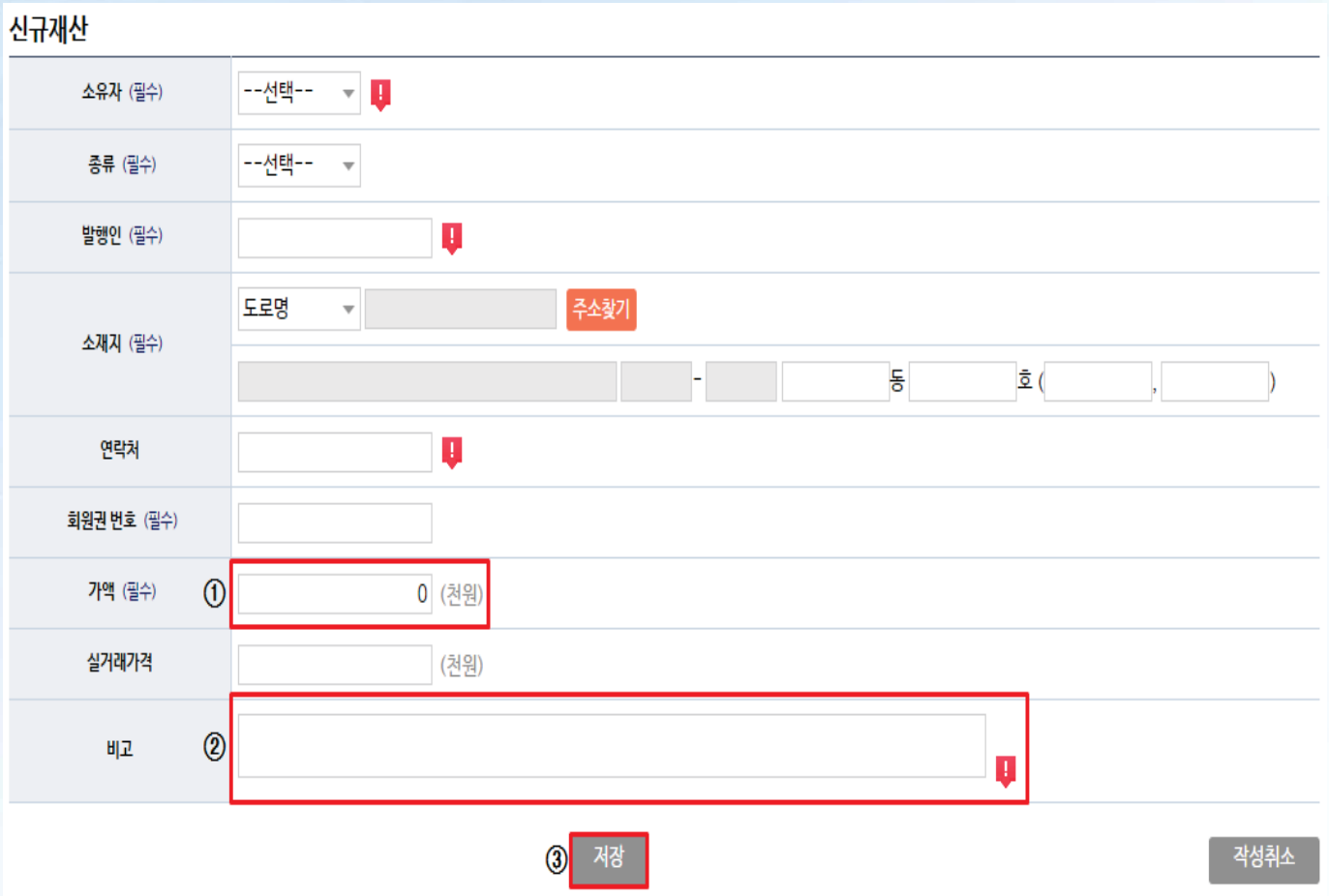

□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인 경우 등록

- (필수) 소유자, 종류, 발행인, 회원권번호, 가액, 비고 등을 입력

① '가액'은 취득가액을 입력.

※ 골프회원권 가액 신고 방법

- 신규 매입한 경우 실거래가격(매입가격)으로 신고하되, 상속 · 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 표준액으로 신고
- 이전 신고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시가표준액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 신고 (이전 신고 시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신고)

※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ETAX), 이택스(ETAX) 또는 회원권 소재지 지자체에 문의

② 콘도미니엄은 부동산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회원권 항목에 등록하고 '비고'란 에 면적도 기재

③ 모든 작업완료 후 저장 클릭

Ⅱ. 최초신고서 작성방법 : 지식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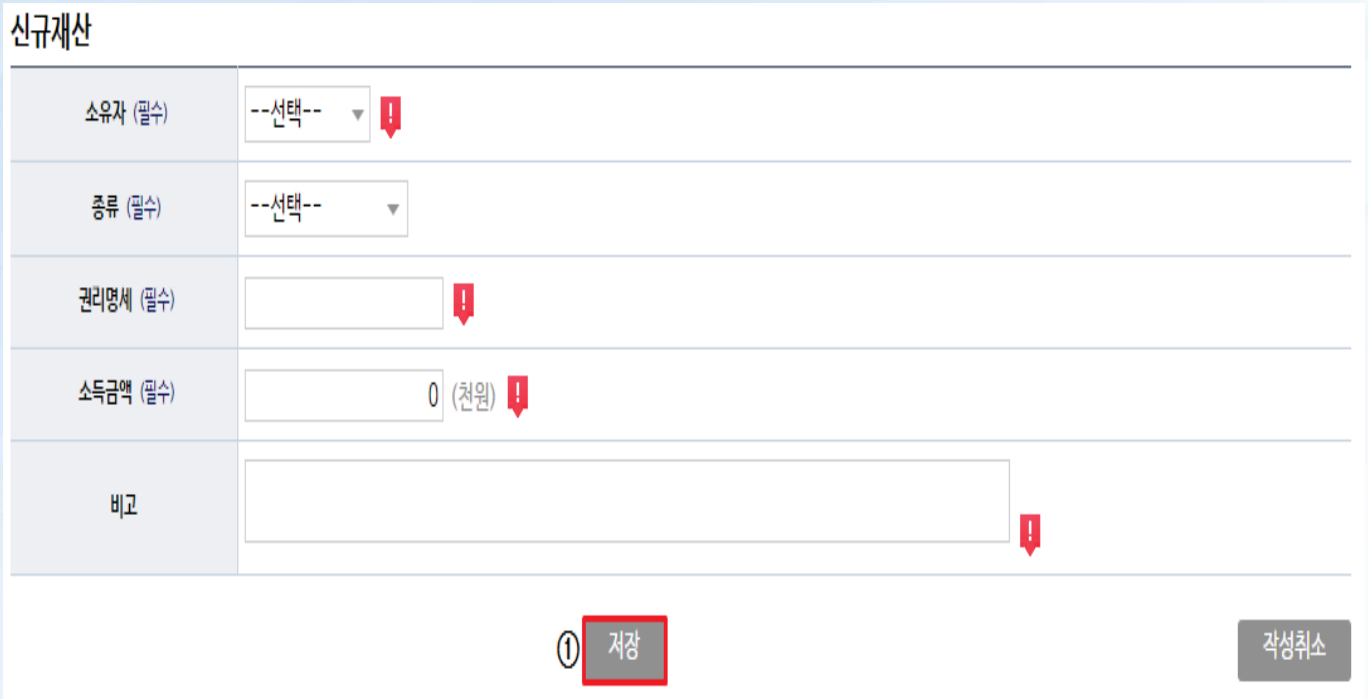

□ 소유자별 연간 1천 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특허권 · 실용신안권 · 의장권 · 상표권 · 저작권 등)을 등록

- (필수) 소유자, 종류, 권리명세, 소득금액, 비고를 입력

① 모든 작업완료 후 저장 클릭

Ⅱ. 최초신고서 작성방법 : 출자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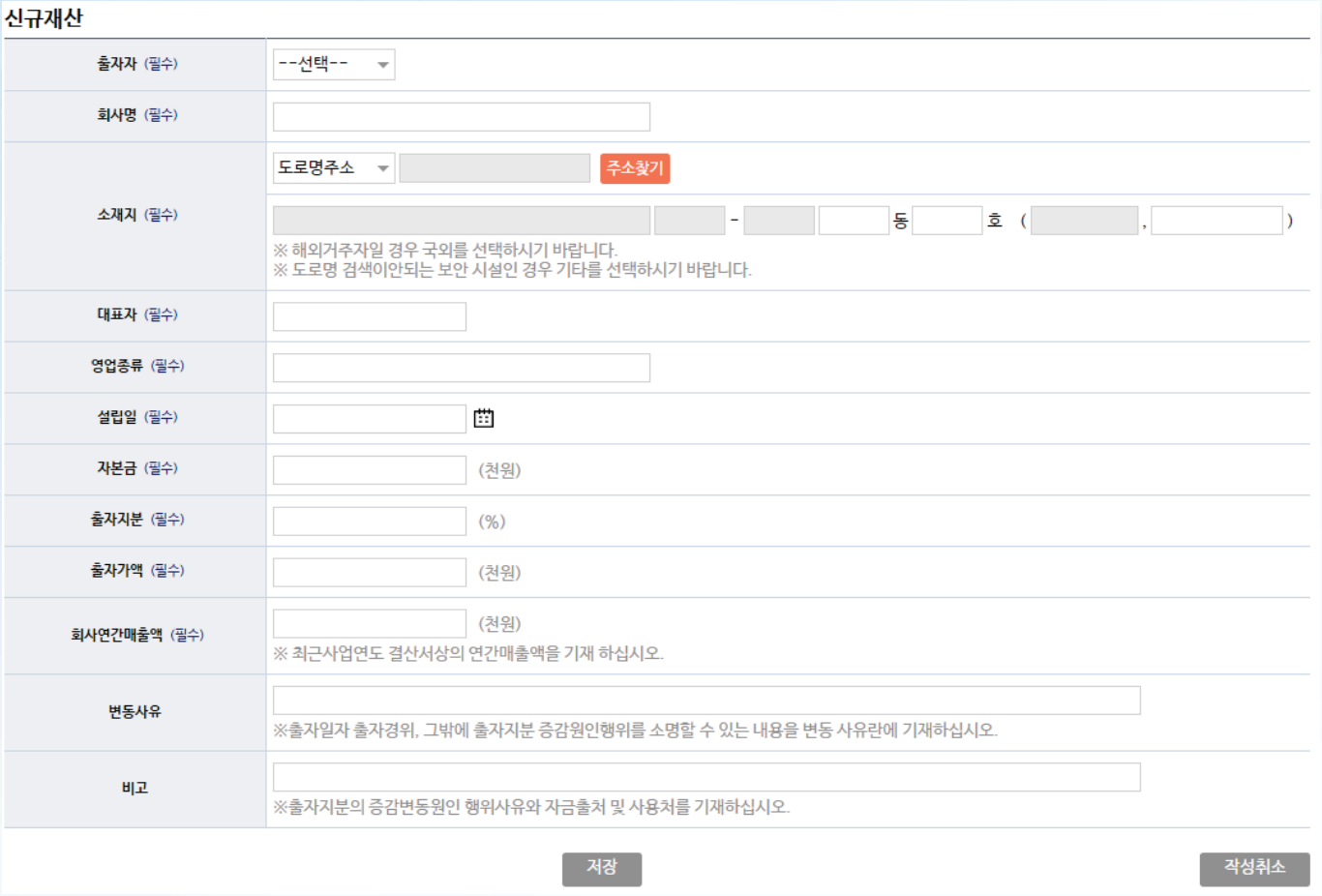

□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 출자지분을 등록**

- (필수) 출자자,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영업종류, 설립일, 자본금, 출자지분, 출자가액, 회사연간매출액, 비고를 입력

※ 연간 매출액은 등록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합명·합자·유한회사 결산서 상의 연간 매출액을 입력

□ **합명·합자·유한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체는 등록대상이 아님. 사업으로 인해 등록대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예금, 유가증권, 채권, 채무, 부동산 등의 보유 형태에 따라 해당 항목에 등록**

Ⅱ. 최초신고서 작성방법 : 출연재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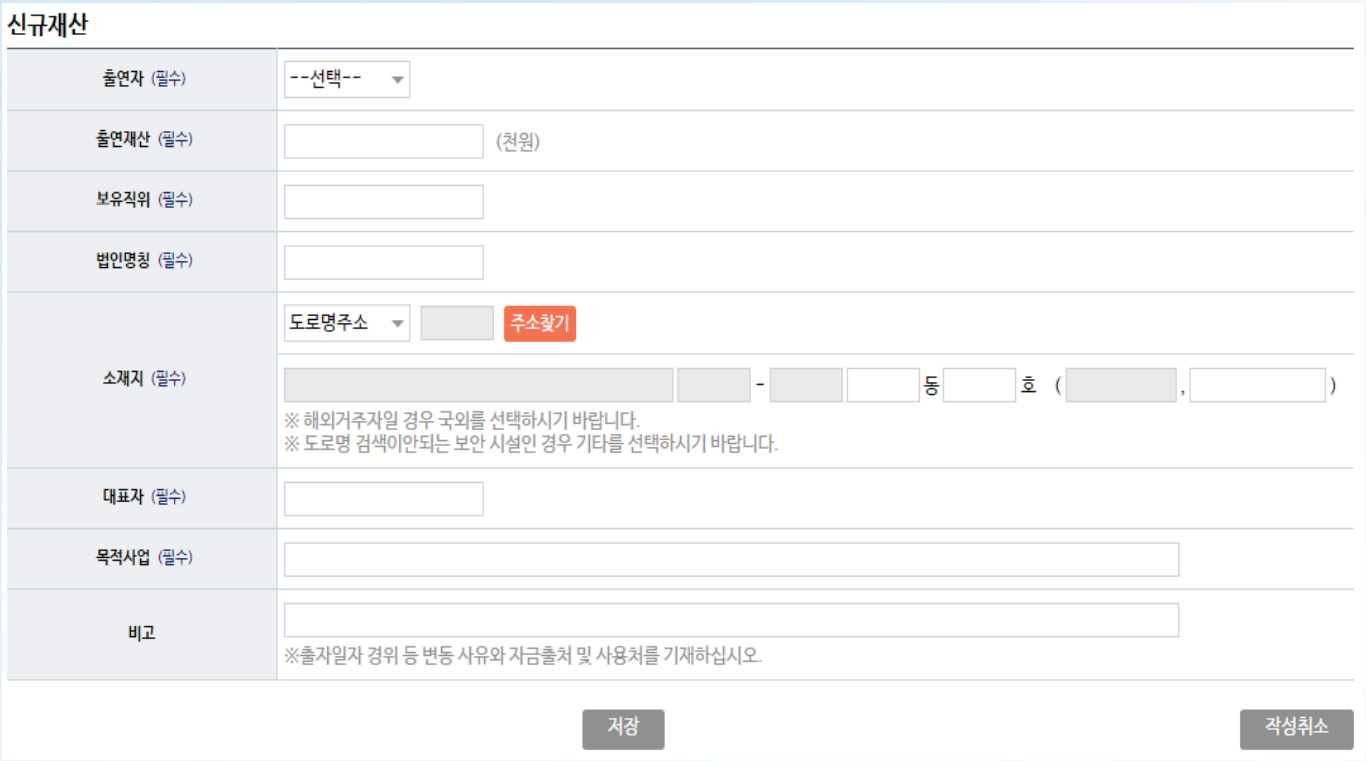

□ 비영리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뜻함

- (필수) 출연자, 출연재산, 보유직위, 법인명칭, 소재지, 대표자, 목적사업, 비고를 입력

Ⅱ. 최초신고서 작성방법 : 미신고내역검증

PETI 공직윤리시스템 | 마이페이지 | 재산신고 | 주식백지신탁 | 취업심사 | 게시판

총괄표작성

- 토지
- 건물
- 자동차
- 현금(수표)
- 예금/보험 (금융정보)
- 정치예금
- 유가증권 (금융정보)
- 사인간 채권
- 채무 (금융정보)
- 금 및 백금
- 보석류
- 골동품및예술품
- 회원권
- 지식재산권
- 출자지분
- 출연재산
- 총괄표
- 신고내역검증

STEP.01 본인정보 > STEP.02 친족정보 > STEP.03 총괄표작성 > STEP.04 변동요약서 > STEP.05 공개목록작성 > STEP.06 신고서제출

재산신고 > 신고내역검증

○ 본 서비스는 그동안 많은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사항을 알려 드려 본인이 신고한 내용을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서비스입니다.
확인하시고 단순실수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번호	검증내용	확인여부	비고 (※ 사유 등을 메모하시면 향후 확인 시 활용가능)
1	부동산정보활용 점검(단위: 건) 구분 / 회신자료 / 신고자료 / 차이 토지 / 8 / 18 / 10 건물 / 3 / 1 / 2	○예 ○아니오	
2	건물항목에 분양권으로 신고한 내역이 없습니다.	○예 ○아니오	
3	금융정보활용입력 점검(단위: 건) 구분 / 회신자료 / 신고자료 / 차이 예금 / 0 / 6 / -6 증권 / 1 / 4 / -3 금융채무 / 0 / 1 / -1	○예 ○아니오	
① 4	본인 및 친족 주소로 신고된 건물이 건물항목에 신고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순번 / 주소	○예 ○아니오	
② 5	건물항목에 본인 및 친족의 주소이외의 건물이 존재합니다. 임대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를 준 경우는 채무항목에 임대채무로 신고바랍니다. 순번 / 주소	○예 ○아니오	
6	고지거부 재심사 대상이 있으나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 다음 신고시 고지거부하기 신청 하시려면 등록기준일 1개월 이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기변동은 매년 1월말까지)	○예 ○아니오	
7	전체 재산을 변동없음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맞습니까? ※ 전체 재산변동없음으로 신고한 경우는 재산심사시 가중되기 때문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	
8	부동산정보활용 점검(단위: 건) 구분 / 회신자료 / 신고자료 / 차이 토지 건물	○예 ○아니오	

이전 다음

□ **등록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시스템상에서 비교하여 누락 및 실수할 수 있는 내용을 사전 점검토록 제공하는 기능**

- 해당 내용이 무조건 수정 대상은 아니며, 등록의무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이상이 없을 경우 계속 진행

①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거주지 주소에 대한 건물 소유권, 전세권 등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로 관사, 기숙사 등일 경우 해당사실을 친족정보수정의 관리형태에 입력

※ 거주지 주소체계(도로명주소)와 소재지 주소체계(지번주소)의 법정동·행정동 표기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 후 다음으로 진행

※ 소재지가 행정동으로 입력되어 있을 경우 소재지 오기정정에 체크 후 주소 찾기 버튼을 클릭 해 행정동을 법정동으로 수정 완료 후 다음으로 진행

② 신고된 소유건물에 거주하는 등록의무자 또는 친족이 없으며, "채무"란에 "건물임대채무"도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 표시되며 누락한 경우 채무 항목에 추가

- 해당 건물이 공실이거나 무상 임대중인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건물의 "비고"란 에 기재

※ 거주지 주소체계(도로명주소)와 소재지 주소체계(지번주소)의 법정동·행정동 표기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다음으로 진행

II. 최초신고서 작성방법 : 공개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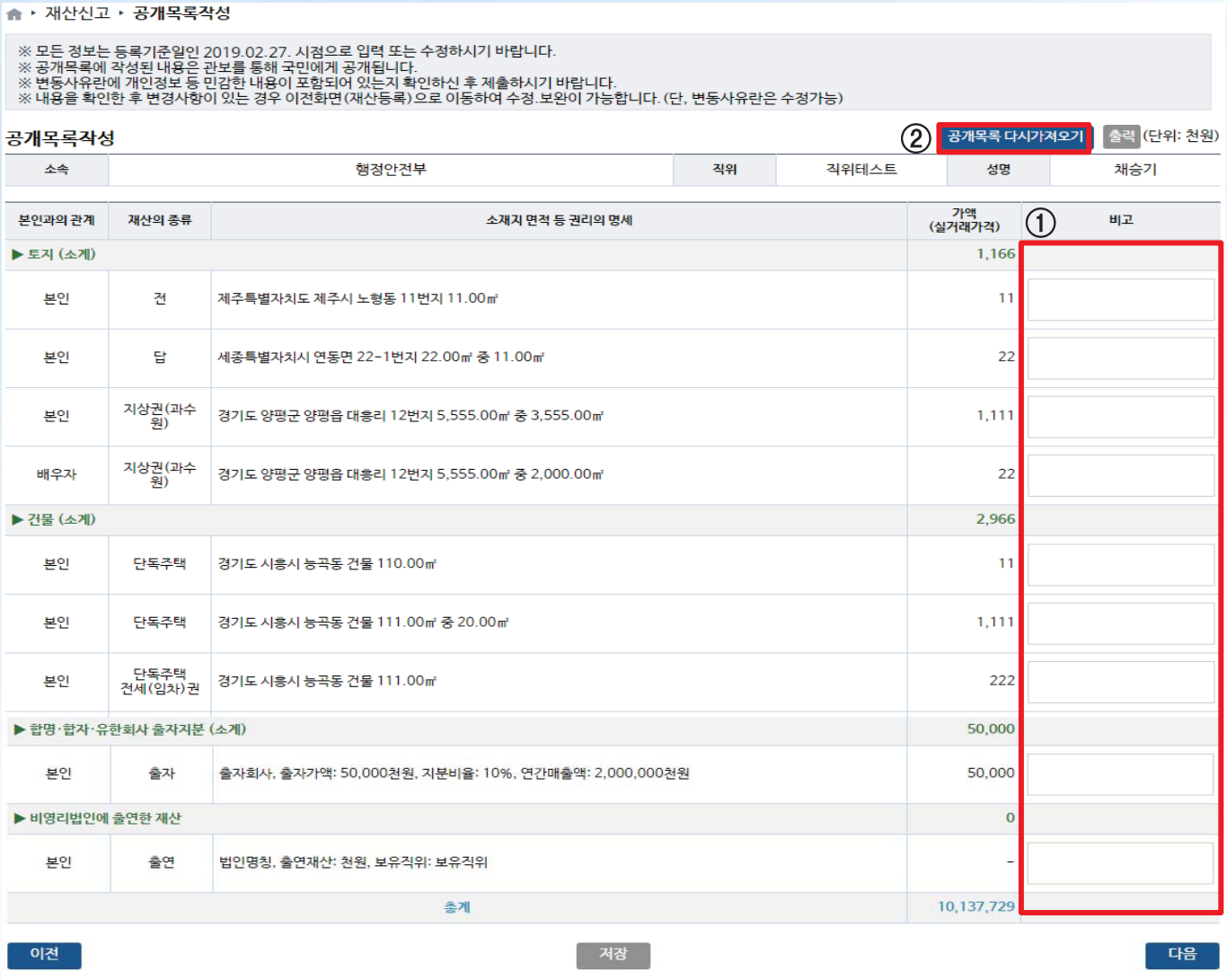

재산신고 ▸ 공개목록작성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19.02.27. 시점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공개목록에 작성된 내용은 관보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됩니다.
※ 변동사유란에 개인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이전화면(재산등록)으로 이동하여 수정.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변동사유란은 수정가능)

공개목록작성 ② 공개목록 다시가져오기 출력 (단위: 천원)

소속	행정안전부	직위	직위테스트	성명	채승기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격)	① 비고
▶ 토지 (소계)			1,166	
본인	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11번지 11.00㎡	11	
본인	답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22-1번지 22.00㎡ 중 11.00㎡	22	
본인	지상권(과수원)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대흥리 12번지 5,555.00㎡ 중 3,555.00㎡	1,111	
배우자	지상권(과수원)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대흥리 12번지 5,555.00㎡ 중 2,000.00㎡	22	
▶ 건물 (소계)			2,966	
본인	단독주택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건물 110.00㎡	11	
본인	단독주택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건물 111.00㎡ 중 20.00㎡	1,111	
본인	단독주택 전세(임차)권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건물 111.00㎡	222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소계)			50,000	
본인	출자	출자회사, 출자가액: 50,000천원, 지분비율: 10%, 연간매출액: 2,000,000천원	50,000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0	
본인	출연	법인명칭, 출연재산: 천원, 보유직위: 보유직위	-	
총계			10,137,729	

이전 저장 다음

□ 등록의무자 중 재산공개자에 한하여 재산 공개목록이 생성됨

- 본인과의 관계 및 재산의 종류, 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비고란의 경우 화면상 직접 수정가능하고, 재산수정은 총괄표에서 수정

① 등록의무자가 총괄표에 입력한 내용이 "비고"란 에 자동으로 표시되며, 등록의무자가 직접 수정 가능

※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내용이므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수정

② 공개목록 다시가져오기 **클릭하여 총괄표에 등록된 재산으로 공개목록 다시 생성**

Ⅱ. 최초신고서 작성방법 : 신고서제출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신고서 제출하기

최초 재산등록의무자로 재산신고서 작성을 완료하셨습니다.

재산등록 사항중 누락·실수한 경우에는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재산형성과정 심사 후 처분기준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전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 바랍니다.

재산신고 내역 중	잘못 신고한 금액	처분기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 한 경우 (법 제8조)	2천만원 미만	실무종결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보완명령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법 제8조의2)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경고
	3억원 이상	징계(해임)·과태료부과

※ 비조회성 재산 1억원 이상을 잘못 신고한 경우 ⇒ 징계(해임)·과태료 부과

·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재산의 증식 ⇒ 징계(해임) 및 법무부(국방부) 조사의뢰

· 예금 항목은 순누락금액(| 누락·과소신고액 - 과다신고액 |) 기준 적용

· 고의로 재산을 허위등록 한 경우, 금액기준 미적용 및 위원회 의결로 최중 처분 결정

신고서출력

재산등록신고서	본인 보관용 신고서 출력	① 출력
공개목록	관보(공보)에 게재되어 공개되는 내용 출력	출력

신고서 수정
제출기한내에는 별다른 절차없이 신고내용을 수정 후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 출력
접수증은 출력하여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 제출기한일 내에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하여 신고서 작성완료

① 필요 시 재산등록 신고서와 공개목록을 출력하여 재산 신고사항 확인가능

②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하여 신고서 제출을 완료

- 신고서 제출 후"접수증"이 출력되면 신고서 접수가 되었음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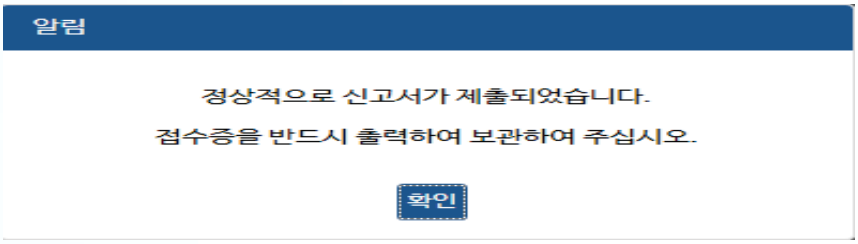

※ 제출한 신고서는 신고기간 내 상시 수정가능하나, 신고서 제출기한 이후에는 신고서 수정 요청을 통해 윤리업무담당자의 승인에 따라 신고서 수정 가능(제출기한 후 10일 이내)